경찰청 공고 제2023-22호

2023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23년 상반기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4일

경 찰 청 장

Ⅰ 채용 분야 및 인원(11개 분야 총 347명 선발)

분야	변호사	항공(조종)	뇌파분석	범죄통계분석	경찰특공대	외국어	안보수사외국어	빅데이터	사이버(통합선발)			경찰행정	전의경
									수사	안보수사	마약수사		
347명(계급)	20(경감)	3(경위)	6(경장)	4(경장)	1/60(경장)/(순경)	11(순경)	5(순경)	6(순경)	68(경장)	7(경장)	7(경장)	120(순경)	29(순경)

□ 경찰청 선발(경찰청 통합선발 후 신임교육 성적에 따라 시·도청 배치)

채용분야	인원(계급)	세부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비고
변호사	20(경감)	경찰청 20	경찰청 선발*
항공	3(경위)	경찰청 3	
뇌파분석	6(경장)	경찰청 6	
범죄통계분석	4(경장)	경찰청 4	
경찰특공대	1(경장) 60(순경)	폭발물분석(남) 1 폭발물처리(남) 16 / 전술요원(남) 43 / 전술요원(여) 1	
외국어	11(순경)	영어 3 / 중국어 2 / 러시아어 1 / 몽골어 1 / 우즈베키어 1 / 캄보디아어 1 / 인도네시아어 1 / 아랍어 1	
안보수사외국어	5(순경)	영어 1 / 중국어 1 / 스페인어 1 / 프랑스어 1 / 베트남어 1	
빅데이터	6(순경)	경찰청 6	

*** 통합선발·신임교육 후 임용시 시·도청별 TO [붙임1] 를 고려하여 교육성적순으로 희망지 배치**

**** 현재 주소지와 상관없이 근무하고자 하는 시·도 경찰청에 원서접수**

□ 시 · 도 경찰청 선발(응시한 시 · 도청별 필기 등 시험진행 및 배치)

채용분야		인원 (계급)	시·도 경찰별 채용예정인원(명)																	비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이버*(통합선발)	수사	68 (경장)	7	2	5	4	4	4	2	3	9	7	3	2	2	3	3	2	3	3	시·도청 선발
	안보수사	7 (경장)					1	1				1	1				1	1	1		
	마약수사	7 (경장)			1			1	1						1	1		1		1	
경찰행정		120 (순경)	36	12	3	4	2	2	2	2	7	2	6	4	5	6	7	10	8	2	
전의경		29 (순경)	9	3	1	1	1	1	1		3	1	1	1	1	1	1	1	1	1	

* 사이버수사·안보수사·마약수사의 임용 분야는 신임 교육성적 우수자 순으로 결정

※ **현재 주소지와 상관없이 근무하고자 하는 시·도 경찰청에 원서접수**

Ⅳ 시험 절차 및 일정

□ 경찰청 선발 분야

시험 절차	시험 분야	시험 일정			
		시험 종류	시험 공고	시험 기간	합격자 발표
원서접수	全 분야	2023. 2. 24.(금) ~ 3. 6.(월) 18:00 <11일간>			
1차시험	변호사	서류전형	2. 24.(금)	3. 23.(목) ~ 3. 24.(금)	4. 11.(화)
	뇌파분석·범죄통계분석·빅데이터	구술실기시험	2. 24.(금)	3. 14.(화) ~ 3. 17.(금)	4. 7.(금)
	항공(조종)	조종시험	2. 24.(금)	3. 21.(화) ~ 3. 22.(수)	4. 7.(금)
	경찰특공대	실기시험	3. 10.(금)	3. 28.(월) ~ 4. 6.(목)	4. 7.(금)
		필기시험	4. 7.(금)	4. 15.(토)	4. 28.(금)
	외국어·안보수사외국어	번역시험	4. 7.(금)	4. 15.(토)	4. 19.(수)
		회화시험	4. 19.(수)	4. 24.(월) ~ 4. 25.(화)	4. 28.(금)
2차시험	변호사	신체·체력·적성검사	4. 11.(화)	5. 1.(월) ~ 12.(금)	신체·체력검사는 현장에서 합격여부 판단
	경찰특공대	신체·적성검사	4. 19.(수)		
	全 분야 (경찰특공대·변호사 제외)	신체·체력·적성검사			
3차시험	全 분야	응시자격 등 심사	해당 없음	5. 15.(월) ~ 5. 25.(목)	5. 31.(수)
4차시험	全 분야	면접시험	5. 31.(수)	6. 7.(수) ~ 6. 13.(화)	**6. 16.(금) 최종 발표**

□ 시·도 경찰청 선발

<table>
<tr><th rowspan="2">시험 절차</th><th rowspan="2">시험 분야</th><th colspan="4">시험 일정</th></tr>
<tr><th>시험 종류</th><th>시험 공고</th><th>시험 기간</th><th>합격자 발표</th></tr>
<tr><td>원서접수</td><td>全 분야</td><td colspan="4">2023. 2. 24.(금) ~ 3. 6.(월) 18:00 <11일간></td></tr>
<tr><td rowspan="2">1차시험</td><td>경찰행정</td><td rowspan="2">필기시험
※(출제)경찰청/(진행)시도청</td><td rowspan="2">3. 17.(금)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td><td>3. 25.(토)
10:00 ~ 11:40(100분)</td><td rowspan="2">3. 31.(금) 17:00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td></tr>
<tr><td>전의경,
사이버수사·
안보수사·
마약수사</td><td>3. 25.(토)
10:00 ~ 11:00(60분)</td></tr>
<tr><td>2차시험</td><td>경찰행정,
전의경,
사이버수사·
안보수사·
마약수사</td><td>신체·체력·
적성검사</td><td>3. 31.(금)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td><td>4. 4.(화) ~ 28.(금)</td><td>신체·체력검사는
현장에서
합격여부 판단</td></tr>
<tr><td>3차시험</td><td>경찰행정,
전의경,
사이버수사·
안보수사·
마약수사</td><td>응시자격 등
심사</td><td>해당 없음</td><td>5. 1.(월) ~ 19.(금)</td><td>불합격자
개별 통보</td></tr>
<tr><td>4차시험</td><td>경찰행정,
전의경,
사이버수사·
안보수사·
마약수사</td><td>면접시험</td><td>5. 19.(금)
시·도 경찰청
홈페이지</td><td>5. 22.(월) ~ 6. 13.(화)</td><td>6. 16.(금) 17:00</td></tr>
</table>

※ 당해 시험일정 변경,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 공지

※ **일정은 기상조건,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Ⅲ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제출

□ **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police.go.kr)로 접수

□ **접수기간** : 2023. 2. 24.(금) ~ 3. 6.(월) 18:00 <11일간>

○ 로그인 시간에 관계없이 **접수마감일 18시 정각까지 결제완료 및 접수번호 확인해야 원서접수 인정**(마감시간 이후에는 내용 수정 및 접수 불가능)

□ 접수 취소 및 응시표 출력기간

채용분야	접수 취소 기간	응시표 출력 기간
변호사	원서접수 기간 내	3. 9.(목) 이후
항공(조종)	3. 9.(목) ~ 3. 19.(일)	
경찰특공대	3. 9.(목) ~ 3. 16.(목)	
뇌파분석, 범죄통계분석, 빅데이터	3. 9.(목) ~ 3. 16.(목)	
외국어·안보수사외국어	3. 9.(목) ~ 4. 11.(화)	
경찰행정, 전의경, 사이버수사·안보수사·마약수사	3. 9.(목)~ 3. 21.(화)	

※ 접수 취소 시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

□ 응시수수료

○ 경위 이상 7,000원, 경장 이하 5,000원(경찰공무원임용령 제44조)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 소요

○ 저소득층 해당자*는 사실 확인 후 응시수수료를 반환(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응시원서 사진

○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3cm×4cm)을 업로드

※ 배경있는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또는 스냅사진과 얼굴이 잘리거나 작아서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으며, 원서접수 기간 이후 사진 교체 불가

□ 서류제출 안내

○ 원서접수 시 제출 서류 **※ 기한內 서류 미제출 시 시험 응시불가**

채용분야	제출 서류	제출 방법	제출 기한
변호사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증 등** (별첨 파일 참조)	**원서접수사이트 첨부** (사이트 내 원서접수 메뉴 클릭 후 '직무수행계획서' 항목에 첨부)	**3. 6.(월) 18:00限**
뇌파분석, 범죄통계분석, 빅데이터	**직무수행계획서** (별첨 파일 참조)		
▸ **위 분야를 제외한 기타 분야는「원서접수 시」서류제출 불요**			

○ 1차 시험 합격 시 제출 서류(세부사항은 별도 공지 예정)

구분	제출 서류명	양식 및 발급 장소
공통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공고문에 양식 첨부
	기본증명서(상세)	인터넷발급(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기본증명서**' 검색),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인터넷발급(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 검색), 주민센터
	개인신용정보서	한국신용정보원, ㈜코리아크레딧뷰로, ㈜나이스신용평가정보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22. 11. 25.(금) 이후 발급한** 것만 인정 **※ 약물검사(TBPE)로 발급시일이 소요되므로 1차 합격발표 즉시 준비**
	응시자격 서류	해당자격(학위·자격증·경력증명서 등) 발급기관
	가산점 자격증	해당자격 발급기관(홈페이지), 자격증 사본

※ 서류에 대해 형식상 적격성은 접수 시 판단하고, 내용상 적격성은 3차 시험에서 최종 판단

○ 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모든 증명서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경력증명 (경력증명서 +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 소득금액 증명원)	▸ 경력증명을 위해서 ①경력증명서 ②4대 보험 이력확인서 ③소득금액 증명서 **세가지 모두 제출**해야 함 ▸ ①경력증명서는 근무한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과 함께 **담당업무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발급기관의 전화번호·Fax번호·E-mail 주소를 기재하고, 현재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를 제출** ▸ ②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③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인터넷(www.hometax.go.kr)이나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
외국어 작성 증명서	▸ 외국어로 작성된 증명서는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

○ **외국어분야** : 귀화자인 응시자는 **귀화 前 국가의 범죄경력조회서** 및 **외국국적 포기(상실) 확인서**(출입국·외국인청장 발급) 제출

※ 발급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공고 확인 즉시 신청할 것(신체·체력·적성검사 시 제출)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동그라미)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동그라미)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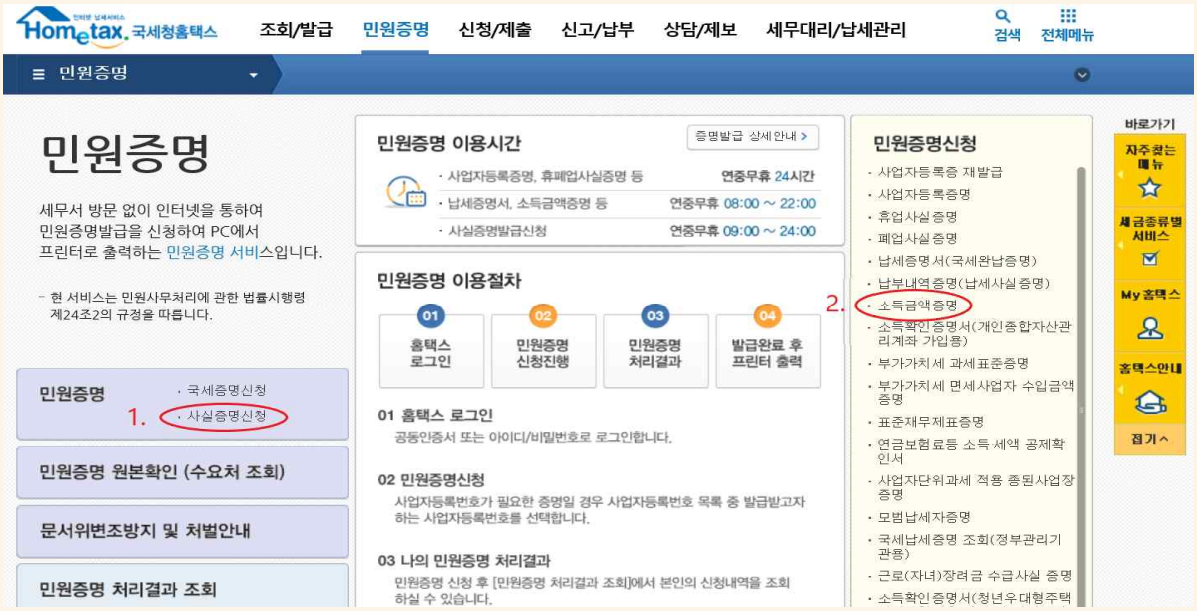

Ⅳ 응시 자격

□ 응시 결격사유 등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결격사유 없어야 함

○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6조, 제46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붙임2 참조]**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응시자 중 사면·복권된 경우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응시 연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별표 1의3〉

채용분야	채용계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변호사	경감	23세 이상 40세 이하	1982. 1. 1. ~ 2000. 12. 31.
항공(조종사)	경위	23세 이상 45세 이하	1977. 1. 1. ~ 2000. 12. 31.
전의경	순경	21세 이상 30세 이하	1992. 1. 1. ~ 2002. 12. 31.
그 外 전 분야	경장·순경	20세 이상 40세 이하	1982. 1. 1. ~ 2003. 12. 31.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각각 연장 * **군복무** : 제대군인,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군복무로 인해 응시연령을 초과하는 응시자는 1차 시험 합격 후 병적증명서 제출			

□ 신체 조건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 2/「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 **[붙임 3]**에 부합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르며,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양식은 **[붙임 4]** 참고

○ 「경찰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은 **[붙임 5]**에 부합

□ 운전면허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취소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제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소지**

▸ 운전면허는 원서접수 시부터 반드시 제1종 보통운전면허증 이상을 발급받은 상태여야 하며 면접시험 최종일(6. 13.)까지 유효해야 함

▸ **변호사(경감), 항공(경위) 분야는 운전면허 제출 불필요**

□ 병역 : 병역요건 불필요(다만, 경찰특공대 전술 분야 남성 응시자는 필요)

※ 단, 항공 분야는 최종 임용 전일까지 전역 및 퇴직이 가능한 자

□ 자격증 등 기준일 및 세부 응시요건

○ 자격증 및 경력증명 기준일

구 분	기 준 일
학위 및 자격증	▸ 신체·적성검사 마지막 날까지 유효해야 함
어학능력 자격증	▸ 면접시험일 첫날까지 유효해야 함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 채용분야별 세부 응시요건

채용분야	응시요건
변호사 **(경감)**	▸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 √ **자격증 취득 기준일** : '23. 5. 12.(금)까지 취득한 경우 인정 **서류전형 시 우대요건** · **우대 요건** : 변호사 자격 취득 후 법조경력 24개월을 초과하는 1개월 당 0.833점 부여 <최대 10점> · **법조 경력** : △판사, 검사,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등(경찰경력 포함)
항공 **(경위)**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회전익 항공기에 한함) 및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회전익 항공기 비행시간 1,500시간 이상 - 기장(정조종사) 이상 비행시간 300시간 이상 포함 - 모의계기 비행시간 미포함 ▸ 최근 3년 이내 회전익 항공기 비행 경력자 ▸ 항공조종사 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1년) 이내일 것)
뇌파분석 **(경장)**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뇌파 측정·분석·개발 관련 논문 발표 또는 특허 보유자 ▸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뇌파 측정·분석·개발 관련성이 있는 직무 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 : 뇌인지과학과, 인간공학과, 의공학과(바이오메디컬공학과, 생체공학과, 생체의공학과), 임상병리학과,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심리학과(생리심리, 인지심리), 전자공학과 분야 ※ 학위에 전공 또는 학위명, 학과명이 관련분야 해당 시 응시 가능하며, 위 열거된 관련분야 명칭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 √ **논문·특허** : △뇌파 측정·분석·개발 관련 학위 논문 또는 학술지·학회 논문 발표 △뇌파 측정·분석·개발 관련 특허 √ **근무경력**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에 준하는 국내·외 기관·법인, 민간단체·기업에 소속되어 실제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경력은 소속 기관·단체 등에서 일반기획·행정업무가 아닌 실제 응시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실무 경력을 필요 √ **연구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산하) 연구 기관, 대학부설 연구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기관, 외국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와 직접 관련성 있는 직무 분야 연구

채용분야		응시요건
범죄통계분석 (경장)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 사회조사분석사(1급 또는 2급)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 국내·외 정규 대학에서 관련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 ▸ 국내·외 정규 대학에서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중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 분야** : 담당 업무가 통계· 범죄동향· 사회통계 분석 분야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경우만 인정 √ **관련 학위** : 통계학, 범죄학, 경찰학, 사회학(△ 졸업 예정자는 해당 없음 △전공·복수전공에 한함(부전공 미인정) △전공명 또는 학위명에 '통계학, 범죄학, 경찰학, 사회학'이 명시되면 인정) ※ 학위명이 위 기준과 다르더라도 통계학·범죄학·경찰학·사회학 관련 과목을 중심으로 교과목이 편성된 학과를 졸업한 경우 3차(응시자격심사) 에서 자격 충족여부 최종 심의·결정함 √ **근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민간업체 등에서 직접 관련성 있는 직무 분야 근무 √ **연구경력** :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산하)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기관, 외국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서 직접 관련성 있는 직무 분야 연구 ※ 경력은 소속 기관·단체 등에서 일반 기획·행정업무가 아닌 실제 응시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력 필요(학교기관 및 연구기관 행정조교 등 경력 불인정)
경찰 특공대	공통 요건	**<무도(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등) 2단 이상인 자>** **▸ 무도 단증은 '가산점 인정 무도 단체 현황【붙임 16】에 기재된 단체 모두 인정**
	폭발물 분석 (경장)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한 자>** ▸ 화학(유기·무기화학·분석화학 포함), 화학공학, 환경공학(환경생명공학 포함), 공업화학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관리기술사, 화약류제조기사, 화공기사, 화공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화학분석기사, 위험물기능장 중 하나 이상 소지자 ▸ 관련 기관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기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방부(국방과학연구소),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 화학·화공·환경 분야 대학·학회 / 화약류 제조업체
	폭발물 처리 (순경)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한 자>** ▸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면허 2급 이상 소지자 ▸ 전자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폭발물처리 3년 이상 경력자 √ **전자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 전자산업기사, 전자기사, 전자기기기능장, 전자응용기술사 √ **폭발물처리** : 軍 폭파주특기(교육 이수기간 제외), 공항공사·항만공사 EOD
	전술 (순경)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시력 나안 좌·우 1.0 이상(교정시력 불가) ▸ 경·군 특수부대 18개월 이상 근무경력자(군 교육기간 포함, 여자 제외) √ **특수부대** : 경찰특공대, △ (육군) 정보사, 특전사, 201·203 신속대응여단(특공여단), 군단 특공연대, 강습대대(舊 7강습대대), 제1산악여단(舊 8특공대), 35특수임무대대(舊35특공대대), 군사경찰특수임무대(舊 헌병특임대), 수색대대 △ (해군) 정보부대(UDU), 해군특수전전단(舊 특수전여단<UDT> 및 해난구조대<SSU>), 군사경찰특수임무대(舊 헌병특임반), 해병대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제259특수임무대대(舊 공군 공정통제사), 제6탐색구조비행전대(舊 탐색구조전대), 비행단·작전사근무지원단 특수임무소대(舊 군사경찰특수임무대) ※ 부대개편 등에 따른 군 특수부대 명칭이 일부 변경되었음

채용분야	응시요건
외국어·안보수사 외국어 (순경)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한 자>** ▸ 해당 언어전공으로 국내 대학의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전문학사×) ※ 해당 언어 '복수전공'이 아닌 '부전공'은 자격요건 불인정 ※ 유사학과의 경우, 해당 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붙임6)를 제출하고 해당 언어 분야 전공과목이 1/2 이상인 경우 자격요건 인정 ▸ 해당 '언어별 주요 사용국'(붙임7)에 기재된 국가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전공 분야 불문) ※ 주한공관(아포스티유) 및 학위 발급국가 재외공관(영사확인)을 통해 진위 확인
빅데이터 (순경)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 관련 분야 석사 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 ▸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자격증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학위** : 전산학과, 응용소프트웨어공학과, 통계학과, 컴퓨터공학과, 시스템공학과, 산업공학과, 수학과, 경영학과 데이터 활용·분석 관련 학과 ※ 학위에 전공 또는 학위명, 학과명에 위 열거된 관련분야 명칭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정 √ **관련 분야** : 데이터 관리, 데이터 품질 관련 컨설팅 및 빅데이터 수집・분석・응용・융합 분야 √ **관련 자격증** : <기술사>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 **근무경력** :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에 준하는 국내・외 기관・법인, 민간단체・기업에 소속되어 실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력에 한함 √ **연구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산하)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기관, 외국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분야와 직접 관련성 있는 연구 경력
사이버수사·안보수사·마약수사 (통합선발, 경장)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 관련 자격증 보유자 중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취득자 중 관련 학과 석사 학위 이상 취득자 √ **관련 자격증** :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응용 <기사> 정보통신, 정보처리, 정보보안 <산업기사> 정보처리, 정보보안 √ **관련 분야** : 전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정보보호, 전자, 가상통화, 블록체인, 핀테크, 디지털포렌식 등 전산 관련 기술 분야(전기 제외) √ **근무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및 그 소속(산하) 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와 직접 관련성 있는 직무 분야 근무 √ **연구경력** :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산하) 연구 기관, 대학부설 연구기관, 석·박사 학위 취득기관, 외국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서 관련 분야와 직접 관련성 있는 직무 분야 연구 √ **관련 학과** : 전산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보호학, 전자공학, 블록체인, AI핀테크, 디지털포렌식 등 전산 관련 기술 분야 전공자에 한함(전기 제외)

채용분야	응시요건
경찰행정 **(순경)**	**<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자>** ▸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 ▸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 √ **관련 학과** : 전공/학과/학위 명에 '경찰'이 명시되면 인정 √ **경찰행정학 과목** :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경찰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2) ▵경찰행정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과목(경찰행정학 전공이수 인정과목에 관한 고시[경찰청 고시 제2021-6호, '22. 3. 1. 시행]) 【붙임 11】 참고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 졸업 학력 인정자 포함
전의경 **(순경)**	▸ 경찰청 소속 '의무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자 또는 전역예정자(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응시요건 등 안내사항

1. 학위 요건은 **'주전공'과 '복수전공'만 인정**되고, '부전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관련 분야·근무 경력·연구 경력에서 **단순 행정업무는 모두 제외**됩니다.
3. 응시요건에 대해 문의 시 응시요건에 대한 문언 해석만 가능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응시요건 충족 여부는 3차 시험(응시자격 등 심사)에서 심의·결정**됩니다.

V 단계별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

□ 1차 시험

○ 서류전형·실기시험 방법

시험유형	채용분야	시 험 방 법
서류전형	변호사	▸ **평가기준 및 배점비율[붙임 12]에 따라 평가**
실기 시험 (과락 : 총점의 60% 미만)	항공	▸ **(조종 실기)** 헬기에 탑승하여 제자리 비행, 장주비행(상승, 선회, 수평, 강하비행) 이·착륙 시 조종능력, 승무원 협조사항, 비행안전성 평가
	뇌파분석	▸ **(구술실기)** 뇌파 측정 및 뇌파 분석 방법 이해 등 전문지식과 근무경력·연구실적 등을 통한 발전역량 평가
	범죄통계 분석	▸ **(구술실기)** 범죄학, 통계 방법론에 대한 이해 및 데이터 분석 관련 전문성 평가(사전 질문지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
	경찰 특공대	▸ **(체력검정)** 경찰특공대 체력검정 기준 **[붙임 8]**에 의거 측정 ▸ **(폭발물분석 구술)** 폭발물 관련 기본·전문지식 평가 ▸ **(폭발물처리 실기)** 성능시험, 결선작업·폭파 등 평가
	외국어·안보 수사외국어	▸ **(번역 필기)** 한국어를 해당 외국어로 번역하는 능력과 해당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능력 평가(10:00~11:00, 60분) **※ 번역 필기시험으로 1차 시험 합격인원 결정** ▸ **(회화 구술)** 번역 필기시험을 통과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시사·문화·치안·생활영역 등 외국어 구사능력 평가 ※ 번역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회화 구술시험 실시, 번역(30%)·회화(20%) 실기시험은 최종합격자 결정에 50% 반영
	빅데이터	▸ **(구술실기)** 데이터 분석 관련 전반적 지식 평가
	▸ **평가내용[붙임 12]에 따라 평가**	

○ 필기시험 방법

시험유형	채용분야	시 험 방 법
필기 시험	경찰특공대 (과락 : 총점의 60% 미만)	▸ **과목(3)** :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10:00~11:00, 60분) ▸ **필기시험 범위** - **(형법)** 총론·각론 - **(형사소송법)** 全 범위 - **(경찰학)** 경찰행정법(경찰행정법의 기초, 경찰조직법, 경찰작용법, 경찰구제법 등) 35% 내외, 경찰학의 기초이론 30% 내외, 경찰행정학 15% 내외, 분야별 경찰활동 15% 내외,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5% 내외
	사이버수사·안보수사·마약수사 (과락 : 총점의 60% 미만)	▸ **필수과목(2)** : 정보보호론, 시스템네트워크보안 ▸ **선택과목(1)** : 데이터베이스론, 정보보안관리 및 법규, 디지털포렌식개론 (10:00~11:00, 60분)

시험유형	채용분야	시 험 방 법
필기 시험	경찰행정 (과락 : 총점의 60% 미만)	▸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영어 ▸ **필수과목(3)** :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 (10:00~11:40, 100분) ▸ **필기시험 범위** - **(형사법)** 형법총론 35% 내외, 형법각론 35% 내외, 형사소송법 30% 내외(수사·증거 각 15% 내외) - **(경찰학)** 경찰행정법(경찰행정법의 기초, 경찰조직법, 경찰작용법, 경찰구제법 등) 35% 내외, 경찰학의 기초이론 30% 내외, 경찰행정학 15% 내외, 분야별 경찰활동 15% 내외,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5% 내외 - **(범죄학)** 범죄원인론 50% 내외, 범죄대책론 30% 내외, 범죄유형론 10% 내외, 범죄학 일반 10% 내외
	전의경 (과락 : 과목별 40% 미만)	▸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한국사, 영어 ▸ **필수과목(3)** :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10:00~11:00, 60분) ▸ **필기시험 범위** - **(형법)** 총론·각론 - **(형사소송법)** 全 범위 - **(경찰학)** 경찰행정법(경찰행정법의 기초, 경찰조직법, 경찰작용법, 경찰구제법 등) 35% 내외, 경찰학의 기초이론 30% 내외, 경찰행정학 15% 내외, 분야별 경찰활동 15% 내외,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5% 내외

※ 문제 이의제기 및 성적공개 기간

구 분	문제 및 가답안 공개	문제 이의제기	확정답안 공개	필기 성적공개
사이버수사·안보수사·마약수사, 경찰행정, 전의경	3. 25.(토) 12:00	3. 25.(토) 12:00 ~ 3. 26.(일) 18:00	3. 27.(월) 18:00	4. 5.(수) ~ 12. 31.(일)
경찰특공대	4. 15.(토) 12:00	4. 15.(토) 12:00 ~ 4. 16.(일) 12:00	4. 17.(월) 18:00	5. 3.(수)~ 12. 31.(일)

○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 (실기·필기시험) 최종 선발인원별 정해진 비율 및 인원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① 경찰행정 경채를 제외한 분야의 실기·필기시험 합격 비율·인원

최종 선발인원	150명이상	100~149명	50~99명	6~49명	5명	4명	3명	2명	1명
합격인원	150%	160%	170%	180%	10명	9명	8명	6명	3명

※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

② 경찰행정 경채 분야의 필기 합격 비율·인원

최종 선발인원	6명 이상	5명	4명	3명	2명	1명
합격인원	200%	10명	9명	8명	6명	3명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시 성별 채용목표인원 초과 선발

○ 객관식 답안지 열람

– **(열람신청)** 필기시험 성적 공개 후 원서접수 사이트

– **(열람방식)** 응시한 시도청 방문, 답안지 사본 열람

– **(열람일시)** 시도청별 지정 일시(2일), 1인당 10분 이내

– **(열람장소)** 시도청 청사 내 별도 지정장소

– **(열람절차)** 본인 확인(신분증) 및 휴대폰·카메라 등 일체 소지품 별도보관 조치 후 열람

※ 신청기간 및 시도청별 열람일시·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공지

□ 2차 시험(신체·체력·적성검사)

시험유형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신체검사		▸국공립 또는 종합병원에서 **'22. 11. 25.(금)** 이후 발급받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로 평가 **[붙임 3, 4, 5]**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와 '신체검사 기준표', '신체검사 세부기준' 모두 합격시 합격 결정
체력검사	**全 분야 (경찰행정 제외)**	▸종목식 체력검사 - ①100m②1,000m③악력 ④팔굽혀펴기⑤윗몸일으키기 ▸'종목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붙임 9]**에 따라 평가 ※응시생의 5%를 무작위 선정하여 금지약물 복용 여부 검사**[붙임 13, 14]**	▸어느 하나의 종목에서 1점을 취득하거나, 총점이 19점 이하인 경우 불합격 결정
	경찰행정	▸순환식 체력검사 - ①장애물코스 달리기 ②장대 허들 넘기 ③당기기·밀기 ④구조하기 ⑤방아쇠당기기 ▸'순환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붙임 10]**에 따라 평가 **▸최초 도입인 점을 감안, 평가일 전에 별도 일정(4월 2째주 예정)을 정하여 체험기회 제공 예정** **※ 일시·장소는 필기 합격자 발표시 공지**	▸완주시간이 4분 40초 이하인 우수 등급 획득 시 합격 ▸다만,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라 어느 한 성(性)을 초과하여 합격시키는 경우에는 보통 등급에 속하는 해당 성의 응시자 중 완주시간에 따른 선순위자를 우수 등급을 받은 인원과 합산한 후 해당 성의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합격자 결정
적성검사		▸성격·인재상·경찰윤리 검사 (총 450문항, 130분)	▸합격·불합격 여부는 판정치 않고, 검사결과를 면접시험시 면접위원에게 참고자료로만 제공

□ 3차 시험(응시자격 등 심사)

○ **시험방법** : 제출서류 검증을 통해 자격요건 등 적격성 심사

○ **합격자 결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요건 적격 여부를 형식·내용상 최종 판단하여 응시자격 부합 시 합격자로 결정

□ 4차 시험(면접시험)

○ **시험방법** : 1단계 단체면접 후 2단계 개별면접 실시

단 계	평 가 요 소	배 점
1단계 단체면접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10점(1점~10점)
2단계 개별면접	품행·예의, 봉사성, 정직성, 도덕성 · 준법성	10점(1점~10점)
가산점	무도·운전 기타 경찰업무관련 자격증**[붙임 15, 16]**	5점(0점~5점)
계	25점	

○ **합격자 결정** : 단계별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 이상 득점자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결정

※ 단,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해 2점 이하로 평가 시 불합격 처리

□ 최종합격자 결정

시험분야	최종 합격자 결정
변호사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체력검사 성적 25%, 면접시험 성적 75%**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항공, 뇌파분석, 범죄통계분석, 외국어, 안보수사외국어, 빅데이터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실기시험 성적 50%, 체력검사 성적 25%, 면접시험 성적 25%**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경찰특공대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실기시험 성적 45%, 필기시험 성적 30%, 면접시험 성적 25%**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사이버수사·사이버안보수사·사이버마약수사 경찰행정, 전의경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 50%, 체력검사 성적 25%, 면접시험 성적 25%**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단, 경찰행정 분야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후 최종 합격인원 결정

Ⅵ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적용분야** : 시·도청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경찰행정 경채**

채용 시·도경찰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선발예정인원	36	12	3	4	2	2	2	2	7	2	6	4	5	6	7	10	8	2
적용여부	○	○	×	×	×	×	×	×	○	×	○	×	○	○	○	○	○	×

○ **채용목표 : 15%**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로 인원수 계산 시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15%를 곱한 인원수로 하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자세한 합격기준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및 제24조의2 참조(붙임 18)

○ **시험단계별 동점자 처리**

– 시험단계별 추가합격선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모두 합격자로 함

※ 단,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에 따른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합격자로 함

Ⅶ 임용 관련

□ 공통사항

○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최종합산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 결정 가능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일부만을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인원 중 일부는 입교 대기 대상자가 될 수도 있음

○ 신임교육 전 ①병역복무, ②학업의 계속, ③6개월 이상 장기요양 질병, ④임신·출산, ⑤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 유예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최종합격자 발표 시 공지

○ 최종합격자는 신임교육 후 결원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 순위에 의해 임용(인력수급에 따라 임용대기가 발생할 수 있음)

○ 최초 임용된 시·도 경찰청에서 다른 시·도 경찰청으로 10년간 전보제한됨

※ 단, 변호사 경채는 최초 임용된 시도청에서 다른 시·도 경찰청으로 5년간 전보 제한

○ 경찰청 통합선발 분야*는 신임 교육성적 우수자 순으로 임용 시 **시·도 경찰청 결정[붙임1 참고]**

* 변호사, 뇌파분석, 범죄통계분석, 외국어, 안보수사 외국어, 빅데이터

○ 사이버수사·사이버안보수사·사이버마약수사는 신임 교육성적 우수자 순으로 **임용 시 임용분야 결정**

○ 임용유예·채용인원 미달 등 발생시 결원·치안수요 등에 따라 일부 지역에 미배치될 수 있음

※ 임용유예의 경우, 교육완료 후 시·도청 배치는 최초 시·도청 배정계획에 따라 결원 시·도청에 배치

□ 분야별 임용사항

○ **(변호사)** 수사경과 부여, 총 5년간 수사부서 근무 원칙

- **1차** : 1급지 경찰서 수사부서(경제팀) 2년 근무
- **2차** : 1급지 경찰서 수사부서 3년 근무 원칙

※ 예외적으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 법률지식을 요하는 부서에 배치 가능

○ **(항공)** 최종합격자는 '항공경과'로 임용 후 채용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시·도 경찰청(항공대) 발령, 신임교육과정 입교(先 임용, 後 교육)

○ **(뇌파분석)** 수사경과 부여,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6개월 근무 후 과학수사부서에서 5년간 의무복무

○ **(범죄통계분석)** 수사경과 부여,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6개월 근무 후 범죄통계 관련 부서에서 5년간 의무복무

【범죄통계분석 분야 의무복무 세부 내용】

① **(1차 근무)** 1급지 경찰서 수사부서(경제팀 등) **최소 6개월 근무 (최대 1년)**

② **(2차 근무)** 1차 근무 후, 시도청 범죄통계 관련 부서에서 **잔여기간 근무**를 원칙
※예외 : 시도청 배치 인원 중 본청 범죄통계 부서에 직접 배치 가능

▸ 본청 근무 연수도 의무근무 연수에 포함됨

▸ 5년간 범죄통계 관련 분야(수사부서 포함) 연속 근무 원칙, 5년 경과 후 희망부서 근무 可(단, 본청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정원 부족 등)가 있는 경우 연속으로 근무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타 부서 근무 可)

○ **(경찰특공대)**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등 현장부서 1년 내외 근무 후 5년간 경찰특공대 의무복무

○ **(외국어)**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1년간 근무 후 외사 관련 부서에서 5년간 의무복무

○ **(안보수사외국어)** 보안경과 부여,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6개월 근무 후 안보 관련 부서에서 5년간 의무복무

○ **(빅데이터)**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6개월 근무 후 데이터 분석업무 관련 부서에서 5년간 의무복무

○ **(사이버수사)** 수사경과 부여,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6개월 근무 후 사이버부서에서 5년간 의무복무
※ 5년간 사이버부서(경찰서 통합수사팀 포함) 분야 연속 근무 원칙, 예외적으로 정원 부족 등 특별한 사유 있을 시 일시적으로 타부서 배치 가능

○ **(사이버안보수사)** 보안경과 부여,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6개월 근무 후 첨단안보수사·안보수사 부서에서 5년간 의무복무

○ **(사이버마약수사)** 수사경과 부여,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6개월 근무 후 마약류 수사부서에서 5년간 의무복무

○ **(경찰행정)** 수사경과 부여, 지역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6개월 근무 후 경찰서 경제팀에서 5년간 의무복무

○ **(전의경)** 임용 후 순번에 따라 2년간 기동대 또는 특별경비부서 근무

응시자 참고 및 유의사항

공통 유의사항

가. 시험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 사진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특히 접수 시 가산점 미기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 발표일부터 1개월 내인 2023. 7. 17.(월)까지 education@police.go.kr로 요청시 반환해 드립니다.

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모든 시험절차에서 응시가 불가능하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운전면허증·주민번호가 인쇄된 장애인 등록증·기간만료 전 여권(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신형여권은 불가)만 인정**되고, **모바일 운전면허증,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분증이 필요한 이유는 시험 도중에 신원확인을 위한 것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휴대가 금지되는 전자기기'에서만 현출되므로 신분증명 수단으로 허용되지 않음

라.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공지사항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경찰청에서 공고한 장소에 시험시각 정각을 넘어 도착할 경우 해당 시험에 절대 응시할 수 없으니 반드시 시간 엄수바랍니다.

사. 원서접수 마감은 **'23. 3. 6.(월) 18시 정각**까지이며 **결제완료 후 반드시 접수번호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접수번호 없으면 원서접수 미완료)**

아. 각 분야 **경력채용에 필요한 여러 응시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학위**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제4호의 평가요소인 **가산점으로 중복인정 되지 않습니다**.

【가산점으로 인정되지 않은 자격증·학위·성적 예시】

▸ 변호사 분야 응시자가 보유한 변호사 자격증 및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

▸ 경찰특공대 공통 응시요건으로 사용한 2단 이상 무도 단증

※ 태권도 2단 단증을 응시요건으로 사용한 경우 유도·검도 등 다른 분야의 단증만 가산점이 인정되고, 태권도 단증은 가산점이 인정 안됨

▸ 외국어 영어 분야 응시자의 영어 관련 자격증

※ 영어 분야 응시자는 일어(JLPT) 성적은 가산점이 인정되나, 영어(TOEIC·G-TELP 등) 성적은 가산점이 인정 안됨

자. 이 시험계획(일정, 장소 등)은 다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최소 일주일에 1회)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접속**해서 **갱신되는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 **영어·한국사(검정제) 성적등록**은 반드시 필기시험 예정일 전일까지 등록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제1항5호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

가. 코로나 확진 등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지정된 **격리자 등***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지정된 별도 시험장 또는 시험실에서 응시하여야 합니다. 단, 타 지역에서 확진된 경우, 여건 등에 따라 시험응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입원치료,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중인 사람

나. **격리자등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한 시·도청에 신고하여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응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유형별 시험장 운영 방법(案)

응시자 유형	시험장
입원치료 응시자	의료기관 내 별도 건물 또는 사전 지정된 별도 시험실
자가 또는 시설치료 중인 응시자	사전 지정된 별도 시험실 ※ 재택시험 불가

다. **시험 시작 전 및 시험 진행 중 유증상자**는 시험이 중지될 수 있으며, **별도의 시간을 지정하여 실시**될 수 있습니다.

라. **시험장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시험장 및 휴식시간 등에도 다른 응시자와 가급적 1m 이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시험감독관이 실시하는 본인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본인 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사. 다음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독관이 즉시 퇴실조치 합니다.

- ▸ 발열검사 등 시험장 출입 전 방역 확인 요구에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 ▸ 그 밖에 감독관이 판단하여 응시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시험 응시 격리대상 수험자 이동 시 준수사항

※ 중앙방역대책본부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 2023. 1. 27.

〈외출 전 준비사항〉

○ 시험 주최기관에 격리대상자의 시험 응시 가능 여부 확인합니다.
○ 관할 보건소에 외출 허용 요청 및 외출 사실 통보(이동경로 및 수단)합니다.
○ 외출 전, 외출 시 주의사항을 숙지합니다.
* 보건소 안내 또는 시험 주최기관의 홈페이지 안내문 참조
○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 여유분, 일회용 장갑, 손소독제, 소독용 티슈, 종량제 봉투 등 필요한 물품을 준비합니다.
○ 식사가 필요한 경우 외출 전 개인식기류와 도시락·물을 준비합니다.

〈외출 중 주의사항〉

○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점을 상시 상기하여 주의합니다.
○ 격리장소를 나가기 전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이상)를 착용하고, 외출 중 벗지 않으며, 마스크 착용 방법에 따라 올바르게 착용합니다.
- 마스크 탈의가 부득이하게 꼭 필요한 경우에는 야외에서 타인과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곳에서 잠시(약 5분 내외) 탈의할 수 있습니다.
* 호흡곤란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안정시까지
○ 시험장 이동 시 도보·자차·방역택시 등을 이용합니다.
- 자차 이동 시 본인이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자 1인만 동행합니다.
- 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 이동 중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바로 시험장으로 갑니다.
○ 화장실은 고사장 내 별도로 마련된 격리자 전용 화장실만 이용해주세요.
○ 타인과 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은 하지 않습니다.
○ 손소독은 수시로 하며, 사용한 물품 등은 자가 소독합니다.
○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바로 격리 장소로 돌아갑니다.
○ 외출 동안 발생한 쓰레기는 격리장소로 가져와야 하며, 소독 후 격리해제 후 배출하여야 합니다.

〈외출 후 주의사항〉

○ 외출 동안 발생한 쓰레기를 담은 종량제 봉투는 외부를 다시 한번 소독 후 보관, 격리 종료 후 배출합니다.

※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시험에 응시하는 격리대상 수험자의 보호자(운전자) 준수사항

ㅇ 차량 탑승 전 KF94 동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리대상자와 이동 전 과정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ㅇ 보호자(운전자)는 이동 전 과정에서 격리대상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 격리대상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의 대각선)으로 착석하도록 합니다.

ㅇ 격리대상자와 항상 거리를 유지하여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ㅇ 차량 이용 전 창문을 열어 차량 내 환기를 충분히 하여 주시고, 이동 과정에서는 자동차 환기시스템을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여 주세요.

- 이동 과정 중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차량 안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ㅇ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을 자주 합니다.

ㅇ 격리대상자와 대면 전후에는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이용하여 손위생을 합니다.

ㅇ 식사가 필요할 경우 격리대상자와 별도로 분리하여 식사합니다.

ㅇ 시험 종료 후 귀가 시 다른 장소에 들르지 않고 격리대상자가 바로 격리 장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ㅇ 격리대상자 탑승 한 차량 내부 및 손잡이 등은 소독하여 줍니다.

- 시험장에서 하차 후 1회, 격리 장소에 하차 후 1회, 최소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합니다.

필기시험 유의사항

가. 시험당일 **09:20까지 해당 시험교실에 입실** 후 본인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도핑테스트 비정상분석 결과자 포함)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연령, 가산점,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의해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붙임 2,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참조

나. 답안지의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답안 수정은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수정 가능**하며, 수정테이프 이외의 도구를 사용하여 정정하였을 경우 해당 문제의 답을 무효 처리합니다.

다. 응시자는 답안 작성 시 반드시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 감독관의 시험 종료시간 예고,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시계가 비치된 경우라도 이를 참고하여서는 안됨)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해서, **본인의 시계로 시험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답안지 교체는 시험종료 전까지 가능하나, 시험종료 타종이 울리면, 답안 작성을 즉시 멈추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답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속 작성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필기시험 응시자는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견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전자기기·모자·방석·무릎담요·커블체어·교과서·노트·연습장·참고서는 **가방**에 넣어 시험실 밖(복도 등)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돋보기·귀마개(이어플러그)** 등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필요한 물품은 시험실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야 소지·사용 가능합니다.

시험 도중 소지·사용 가능 물품

신분증, 응시표, 개인 필기도구(컴퓨터용 사인펜 등), 수정테이프,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 마스크, 귀마개*(이어플러그)

* (크기) 귀마개는 귓구멍을 막기에 적정한 크기만 허용되고, 그 크기가 과도한 경우는 불허, (형태) 스펀지 형태로 된 것에 한함

– 귀마개 착용으로 인해 시험감독관의 종료시간 예고, 타종 소리 등을 듣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①전원 OFF → ②개인 가방에 집어 넣기 → ③가방을 복도 밖에 적치**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전원을 OFF하지 않아** 시험 도중 휴대폰 등 **전자기기에서 벨·알람·진동 등이 있는 때**에는 확인 과정을 거쳐 특이사항이 존재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사. **시험시간 중에는 1회에 한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사용원칙과 절차 등에 따라 화장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원칙>

1. 사용 가능 분야 : **사이버수사·안보수사·마약수사, 경찰행정, 전의경**
경찰특공대, 외국어·안보수사 외국어

2. 사용 시간
- **사이버수사·안보수사·마약수사, 전의경** : **10:20 ~ 10:40**
(시험시작 20분 이후 ~ 시험종료 20분 전)
- **경찰행정 : 10:30 ~ 11:20** (시험시작 30분 이후 ~ 시험종료 20분 전)
- **경찰특공대, 외국어, 안보수사외국어 : 10:20 ~ 10:40**
(시험시작 20분 이후 ~ 시험종료 20분 전)
※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

3. 사용횟수 : **1인당 1회**에 한함

<사용 절차> (소음 주의)

1. 시험 중 손을 들어 화장실 사용 요청
   ※ 화장실 사용자가 많은 경우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
2. 문제지와 답안지를 뒤집은 후 복도로 이동, 복도감독관과 동행하여 이동
3. 응시자 소지품 검사(동성 복도감독관이 실시)
   ① 주머니를 뒤집어 감독관에게 보여 줌
   ② 휴대용스캐너(MD)를 이용하여 전자기기 검사 실시
4. 복도감독관이 지정한 화장실 및 용변 칸 사용
5. 화장실 사용 후 복도감독관이 소지품 검사 재실시
6. 복도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시험실 입실

<유의사항>

1. 사용 시간대 외 및 제한 횟수를 초과하여 화장실 사용 시 재입실 불가(관리본부 대기)
2. 시험 관련 자료 등 소지, 화장실 내 시험 관련 내용 기재 등의 경우 부정행위로 적발
3. 시험 중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은 본인 좌석에서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아.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멀티펜 등 필기구로 인한 똑딱 소리, 반복적인 헛기침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답안지 배부가 시작된 이후에는 시험장 건물 현관 출입구가 폐쇄되며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구술실기 유의사항

가. 공고된 시각(정각)보다 **늦게 시험장에 도착한 응시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시험장에서는 **마스크(KF94) 착용을 권고**합니다.

다. 휴대폰, 태블릿 PC, 노트북, 녹음기,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는 실기시험 중 절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실기시험 시작 전, 시험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종료 후 반환**됩니다.

라. **사전에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응시자는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 시험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실기시험위원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피'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바. 시험의 공정성을 위하여 시험시간 중 외부인과의 접촉 및 시험 종료 후 대기 중인 응시자와의 접촉이 금지되며, **질문내용 등 시험 관련 사항의 외부 유출을 금지**합니다.

사. 시험장 내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 시험장은 모두 주차가 불가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체력검사 유의사항

가. 금지약물의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고자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도핑테스트를 실시합니다.

나. 시험장 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체력시험 장면을 촬영할 수 없으며,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다. 체력시험 시 부상 방지를 위해, 시험실시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체력시험 과정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하여 경찰청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체력시험 이전이나 실시 중에 본인 부주의로 발생한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시험 연기 또는 추가 시행은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체력시험 중 바닥 미끄럼에 주의하시고, 스파이크 착용(운동장 사정에 따라 불가할 수 있음)은 가능하나 장갑이나 손미끄럼방지 가루(탄산마그네슘가루)는 사용이 금지되며,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장구(기구)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바. 체력시험 중 판정관 및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허가 없이 무단이석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사.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체력시험 판정 보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영상을 촬영할 수 있으며, 응시자가 체력시험 등록 시 체력시험 영상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체력시험장 입장 시 영상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종목별 시험 종료 후 폐기

신체검사 유의사항

가.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나. 신체검사는 **체내 잔류하는 약물검사(TBPE)를 위해** 국·공립 병원 또는 종합병원 등에서 공고일 기준 3月 이내(**'22. 11. 25.(금) 이후 발급)에 실시(붙임 4 양식참조)**하여야 하고, 국·공립 병원 또는 종합병원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병원 아닌 개인의원에서 발급받은 신체검사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응시자 본인이 직접 검사예약한 후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신체검사 결과지를 정해진 기일 내에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 시 신분증 및 응시표, 사진, 검사비용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라. 몸에 부착된 테이핑은 신체검사 전에 제거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마. 색각이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등 정밀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신체검사의 적격성 확인을 위해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 문신을 이유로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상 판정보류를 받거나 문신을 자진신고한 응시자는 신체·적성검사 당일 사전조사서(사진촬영 포함) 작성 후 '신체검사 심사위원회'(별도 일시 지정)를 통해 합격 여부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 신체검사서는 반드시 검사를 시행한 지정병원의 압인, 담당의사 서명(인), 지정병원 의료기관장 직인 날인 등의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유의사항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이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나.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또는 3명 이하를 선발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고, **채용분야 시·도 경찰청별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다. **채용 계급이 경위 이하인 채용 분야만 해당**됩니다.

라. 원서접수 시 보훈번호 및 가산점을 입력해야만 인정됩니다.
※ 보훈번호 및 가산점을 잘못 기재 또는 누락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필기 및 실기시험 중 **총점의 60% 미만으로 과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단, 전의경 필기시험 과락은 과목별 40% 미만)

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 가점은 단계별 시험마다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아.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른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시 '총득점에서 합격선의 -3% 점수 이상인지 여부'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적용한 후 판단합니다.

자.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 1577-0606)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점 유의사항

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0점부터 5점까지 정수로 평가(가산점은 최고 5점까지만 인정)합니다.

나.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 제출한 경우 점수가 가장 높은 것만 인정되며, 어학자격증은 면접일 기준 2년 이내 것만 인정됩니다.

다.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은 적성검사 일까지 제출하셔야 인정됩니다.

최종합격자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공고문, 응시표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의 제한 및 임용결격자 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요건에 관한 문의 시 문언 해석만 가능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응시요건 충족 여부는 3차 시험(응시자격 등 심사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심의·결정됩니다.

- 변호사(수사운영지원담당관실) : (02) 3150-1027
- 항공(항공과) : (02) 3150-1271
- 뇌파분석(범죄분석담당관실) : (02) 3150-2313
- 범죄통계분석(수사운영지원담당관실) : (02) 3150-0822
- 경찰특공대(대테러안전과) : (02) 3150-1223
- 외국어(외사기획정보과) : (02) 3150-2376
- 안보수사 외국어(안보수사국) : (02) 3150-1527
- 빅데이터(미래치안정책과) : (02) 3150-3201
- 사이버수사(사이버수사기획과) : (02) 3150-0257
- 사이버안보수사(안보수사지휘과) : (02) 3150-1526
- 사이버마약수사(마약조직범죄수사과) : (02) 3150-1123

경찰행정 경채 필기시험 안내사항

가. 필기시험 과목 ※ 영어 과목은 검정시험으로 대체

시험과목	배 점	문항수	시험시간
형사법	100점	40문항	10:00 ~ 11:40 (100분간)
경찰학	100점	40문항	
범죄학	50점	20문항	

나. 시험 범위 및 출제 비율

- 형사법 : 형법총론 35% 내외, 형법각론 35% 내외, 형사소송법 30% 내외(수사·증거 각 15% 내외)
- 경 찰 학 : 경찰행정법(경찰행정법의 기초, 경찰조직법, 경찰작용법, 경찰구제법 등) 35% 내외, 경찰학의 기초이론 30% 내외, 경찰행정학 15% 내외, 분야별 경찰활동 15% 내외,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5% 내외
- 범 죄 학 : 범죄원인론 50% 내외, 범죄대책론 30% 내외, 범죄유형론 10% 내외, 범죄학 일반 10% 내외

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토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	PBT 470점 이상
		IBT 52점 이상
토익 (TOEIC)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550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241점 이상
지텔프 (G-TELP)	아메리카합중국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Level 2의 43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	457점 이상
토셀 (TOSEL)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	Advanced 510점 이상

○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20.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 2020.1.1.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TOEFL은 응시국가 제한 없이 인정, TOEIC은 일본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 G-TELP는 미국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 TOSEL은 베트남·미얀마에서 응시한 성적만 인정하고,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사전등록을 해야 함

※ 토익 등 검정시험 자체의 유효기간이 만료했고, 사전등록하지 않은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사전등록 관련 안내

○ 사전등록 방법
- 텝스(TEPS), 지텔프(G-TELP), 토익(TOEIC)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 사전등록
- 토플(TOEFL), 플렉스(FLEX), 토셀(TOSEL) : education@police.go.kr로 성적표를 이메일 발송 후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로 연락 필요

○ 사전등록 시한
- 텝스(TEPS), 지텔프(G-TELP), 토익(TOEIC) : 유효기간(2년) 만료 전
- 토플(TOEFL), 플렉스(FLEX), 토셀(TOSEL) : 유효기간(2년) 만료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성적표를 education@police.go.kr로 발송한 경우

○ 사전등록 유의사항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사전등록 시 해당 영어능력검정 시험명, 등록번호, 성명, 시험일자, 점수 등을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함

○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한 경우
- 유효기간 만료 전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 고시센터에 사전등록이 된 경우에는 성적이 인정됨
- '23.3월부터 사전등록하여 경찰청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경찰청(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에만 사전등록해야 함
- '23.3월 이후 인사혁신처에 사전등록한 경우, 자료 공유가 되지 않아 성적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다만,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등록한 시기가 '23.2월까지인 경우에는 성적 인정 기간 내에 한해 유효한 성적으로서 인정됨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성적 제출 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함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는 추가 등록기간[2023. 3. 20.(월)~24.(금)] 내에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함

※ 추가 등록기간 내 성적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됨

전의경 경채 필기시험 안내사항

가. 필기시험 과목

시험과목	배 점	문항수	시험시간
형법	100점	20문항	10:00 ~ 11:00 (60분간)
형사소송법	100점	20문항	
경찰학	100점	20문항	

※ 한국사 · 영어 과목은 검정시험으로 대체

나. 시험 범위 및 출제 비율

– 형법 : 총론·각론 – 형사소송법 : 全 범위

– 경 찰 학 : 경찰행정법(경찰행정법의 기초, 경찰조직법, 경찰작용법, 경찰구제법 등) 35% 내외, 경찰학의 기초이론 30% 내외, 경찰행정학 15% 내외, 분야별 경찰활동 15% 내외,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5% 내외

다. 한국사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23년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2019.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등급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성명, 생년월일, 한국사 인증번호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함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기간 [2023.3.20.(월)~24.(금)] 내에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함

※ 추가 등록기간 내 성적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됨

라.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 경찰행정 경채 분야와 '종류 및 기준점수' 동일

경찰특공대 경채 필기시험 안내사항

가. 필기시험 과목

시험과목	배 점	문항수	시험시간
형법	100점	20문항	10:00~11:00 (60분간)
형사소송법	100점	20문항	
경찰학	100점	20문항	

나. 시험 범위 및 출제 비율

– 형법 : 총론·각론 – 형사소송법 : 全 범위

– 경찰학 : 경찰행정법(경찰행정법의 기초, 경찰조직법, 경찰작용법, 경찰구제법 등) 35% 내외, 경찰학의 기초이론 30% 내외, 경찰행정학 15% 내외, 분야별 경찰활동 15% 내외,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5% 내외

붙임 1 경력경쟁채용 분야 및 인원(11개 분야 총 347명)

분야	변호사	항공	뇌파 분석	범죄 통계 분석	사이버(통합선발)			경찰 특공대	외국어	안보 수사 외국어	빅 데이터	전의경	경찰 행정
					수사	안보 수사	마약 수사						
347명 (계급)	20 (경감)	3 (경위)	6 (경장)	4 (경장)	82 (경장)			1/60 (경장/ 순경)	11 (순경)	5 (순경)	6 (순경)	29 (순경)	120 (순경)

구분	채용 분야	세부 분야	계급 (인원)	시·도청별 채용예정인원(324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본청	변호사		경감 (20)	본청 **20**																
	항공		경위 (3)	본청 **3**																
본청		소계(23)		본청 **23**																
시·도청	범죄통계분석		경장 (4)	1			1					1	1							
	뇌파분석		경장 (6)		1	1			1			1		1				1		
	사이버 *통합 선발	수사	경장 (82)	7	2	5	4	4	4	2	3	9	7	3	2	2	3	3	2	3	3
		안보 수사						1	1				1	1				1	1	1	
		마약 수사				1			1	1						1	1		1		1
	경찰 특공대	폭발물 분석(남)	경장 (1)	1																	
		폭발물 처리(남)	순경 (16)	3	1	1	1		1	1		2	1	1	1		1	1	1		
		전술요원 (남)	순경 (43)	9	2	3	3	1	3	2	1	2	2	2	2	1	2	1	3	2	2
		전술요원 (여)	순경 (1)	1																	
	외국어 *상세(붙임1-1)		순경 (11)	2		1						5				1	1			1	
	안보수사 외국어 *상세(붙임1-2)		순경 (5)	4											1						
	빅데이터		순경 (6)	6																	
	전의경		순경 (29)	9	3	1	1	1	1	1		3	1	1	1	1	1	1	1	1	1
	경찰행정		순경 (120)	36	12	3	4	2	2	2	2	7	2	6	4	5	6	7	10	8	2
시·도청별		소계(324)		**79**	**21**	**16**	**14**	**9**	**14**	**9**	**6**	**30**	**15**	**15**	**11**	**11**	**15**	**15**	**19**	**16**	**9**
총계				**347명**																	

붙임1-1 관서별 외국어 전문요원 선발·배치 상세내역

연번	배치 부서 시도청	외국어	비고
1	서울청	아랍어	1명
2		중국어	1명
3	대구청	몽골어	1명
4	경기남부청	인도네시아어	1명
5		러시아어	1명
6		캄보디아어	1명
7		영어	2명
8	충남청	우즈베크어	1명
9	전북청	영어	1명
10	경남청	중국어	1명

붙임1-2 관서별 안보수사외국어 전문요원 선발·배치 상세내역

연번	배치 부서 시도청	외국어	비고
1	서울청	영어	1명
2		스페인어	1명
3		프랑스어	1명
4		베트남어	1명
5	충북청	중국어	1명

붙임 2 경찰공무원 응시결격사유 등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2항(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2.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

③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별표 1에 따른 특수기술부문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무경찰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사람을 순경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3년을 넘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2. 총경 이하인 경찰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 면접시험일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검사나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 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자격정지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붙임 3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4조의2 제1항 [별표5]

구 분	내용 및 기준
체격	국립·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시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 (色覺)	색각이상(약도 색약은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 시 부정행위 간주로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사시 (斜視)	복시(複視: 겹보임)가 없어야 한다. 다만, 안과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신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붙임 4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양식

(앞쪽)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시험실시기관	② 응시분야	응시번호	성 명		사 진 (3.5㎝ × 4.5㎝) ※ 압인 또는 계인
			주민등록번호		

검 사 내 용

키		cm	체 중		kg
허리둘레		cm	혈 압		
(교정)시력	좌: ( ) 우: ( )	색 각		청력	좌: db 우: db

종 양 질 환		이비인후질환	
호 흡 기 질 환		심 혈 관 질 환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신장/비뇨기계질환	
내 분 비 질 환		혈 액 질 환	
신 경 질 환		피 부 질 환	
근골격계 질환		안 질 환	
정 신 질 환		흉부X선 검사	
직무에 적합한 신체		사 시	
문 신		약물(TBPE) 검사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격 여부	[ ]합 격 [ ]판 정 보 류	합격 사유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공고일 기준 3월

210㎜×297㎜[백상지(80g/㎡)]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①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
   나. ②란에는 응시한 분야을 적어야 합니다.
   (예: 순경 공채, 간부후보생, 변호사 경채 등)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임산부나 흉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흉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흉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산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흉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에 해당하지 않음
   -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만성골수성백혈병' 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사지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붙임 5 경찰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

평가 항목	내 용		신체검사기준(불합격 판정기준)
직무에 적합한 신체	팔다리와 손·발가락		팔다리와 손·발가락이 강직, 절단 또는 변형된 기형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경찰 장비 및 장구 사용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다는 진단을 받지 못한 사람
	척추만곡증(허리휘는 증상)		X-RAY촬영 결과 20도 이상 허리가 기울어져 있는 자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상지관절의 정상 여부		상지 3대 관절(손목・팔꿈치・어깨관절)을 앞과 위 아래로 이동시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 중 상지의 3대 관절이 불완전하거나 관절의 기능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하지관절의 정상 여부		하지 3대 관절(발목・무릎・고관절)을 좌우로 돌리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 중 하지의 3대 관절이 불안전하거나 관절의 기능 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문신	내용	혐오성	사회 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폭력적·공격적이거나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
		음란성	사회 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
		차별성	특정 인종·종교·성별·국적·정치적 신념 등에 대한 차별적 내용
		기 타	범죄단체 상징 및 범죄를 야기·도발할 수 있거나 공직자로서의 직업윤리에 어긋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내용
	노출 여부		모든 종류의 경찰 제복(성하복 포함)을 착용하였을 경우 외부에 노출되어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얼굴, 목, 팔, 다리 등 포함)

비고

위 신체검사기준(불합격 판정기준) 중에서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본다.

붙임 6 | **외국어 · 안보수사외국어 분야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대학교(원)		
	학부·학과		
	졸업년도	년 월	
	학 위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원)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 同 학과는 2023년 경찰청 외국어·안보수사외국어 전문요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문에 기재된 학과와 동일한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학교 담당자	(직위)	성명 (인)
	(연락처)	

2023. . .

○○ 대학교 총장 (직인)

붙임 7 외국어 · 안보수사외국어 언어별 주요사용국

언어	주요 사용국	계
중국어	중국,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5
영어	가나, 가이아나, 감비아, 건지, 괌, 그레나다, 그린란드, 나미비아, 나우루, 나이지리아,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니우에, 니카라과, 도미니카연방, 라이베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연방, 말라위, 말레이시아, 맨섬, 모나코, 모리셔스, 몬트세랫, 몰타, 미국, 바누아투, 바베이도스, 바하마, 방글라데시, 버뮤다, 벨리즈, 보츠와나, 부탄, 브루나이, 사모아, 사이프러스,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세인트헬레나, 솔로몬제도, 수단, 수리남, 스리랑카,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랍에미리트, 앤티가바부다, 앵귈라, 에리트레아,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영국,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영국버진제도, 우간다, 인도, 자메이카, 잠비아, 저지, 지브롤터, 짐바브웨, 카메룬, 캐나다, 케냐, 케이만제도, 쿡제도, 크리스마스섬, 키리바시, 탄자니아, 터크스케이커스, 통가, 투발루, 트리니다드토바고,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팔레스타인, 피지, 필리핀, 호주	88
러시아어	러시아, 라트비아, 몰도바,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10
우즈베크어	우즈베키스탄	1
인도네시아어	인도네시아	1
크메르어	캄보디아	1
몽골어	몽골	1
아랍어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알제리, 예멘공화국,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마요트, 소말리아, 에리트레아, 이스라엘, 지부티, 차드, 코모로	26

스페인어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적도기니,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푸에르토리코, 멕시코	21
프랑스어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모나코, 스위스, 캐나다, 콩고 민주공화국, 카메룬, 아이티, 마다가스카르, 세네갈, 베냉, 부르키나파소, 말리, 토고, 콩고 공화국, 니제르, 바누아투, 코트디부아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부룬디, 지부티, 르완다, 코모로, 적도 기니, 세이셸, 가봉, 기아나, 차드, 기니 공화국	30
베트남어	베트남	1

※ 외교부 발간「세계각국편람(2019)」및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 참조

붙임 8 경찰특공대 체력검정 기준표

분야	종 목	배 점					
남자 전술요원	윗 몸 일으키기 (제한시간1분)	15점	12점	9점	6점	3점	0점
		65회 이상	64 ~ 62	61 ~ 59	58 ~ 56	55 ~ 50	49회 이하
	턱걸이	20점	16점	12점	8점	4점	0점
		30회 이상	29 ~ 26	25 ~ 22	21 ~ 18	17 ~ 14	13회 이하
	2,000m 달리기	20점	16점	12점	8점	4점	0점
		7분00초00 이하	7분00초01 ~7분20초00	7분20초01 ~7분40초00	7분40초01 ~8분00초00	8분00초01 ~8분20초00	8분20초01 이상
	사낭나르기 (무게40kg)	15점	12점	9점	6점	3점	0점
		18초00 이하	18초01 ~19초00	19초01 ~20초00	20초01 ~21초00	21초01 ~22초00	22초01 이상
	왕복달리기 (100m허들)	20점	16점	12점	8점	4점	0점
		35초00 이하	35초01 ~36초00	36초01 ~37초00	37초01 ~38초00	38초01 ~39초00	39초01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10점	8점	6점	4점	2점	0점
		280 이상	279 ~ 275	274 ~ 270	269 ~ 265	264 ~ 260	259 이하
여자 전술요원	윗 몸 일으키기 (제한시간1분)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0점
		55회 이상	54 ~ 50	49 ~ 45	44 ~ 40	39 ~ 35	34회 이하
	1,500m 달리기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0점
		6분40초00 이하	6분40초01 ~7분00초00	7분00초01 ~7분20초00	7분20초01 ~7분40초00	7분40초01 ~8분00초00	8분00초01 이상
	100m 달리기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0점
		14초50 이하	14초51 ~15초00	15초01 ~15초50	15초51 ~16초00	16초01 ~16초50	16초51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0점
		245 이상	244 ~ 240	239 ~ 235	234 ~ 230	229 ~ 225	224 이하
폭발물 처리요원	턱걸이	20점	16점	12점	8점	4점	0점
		30회 이상	29 ~ 26	25 ~ 22	21 ~ 18	17 ~ 14	13회 이하
	2,000m 달리기	40점	32점	24점	16점	8점	0점
		7분00초00 이하	7분00초01 ~7분20초00	7분20초01 ~7분40초00	7분40초01 ~8분00초00	8분00초01 ~8분20초00	8분20초01 이상
	사낭나르기 (무게40kg)	40점	32점	24점	16점	8점	0점
		18초00 이하	18초01 ~19초00	19초01 ~20초00	20초01 ~21초00	21초01 ~22초00	22초01 이상
폭발물 분석요원	1,500m 달리기	40점	32점	24점	16점	8점	0점
		6분40초00 이하	6분40초01 ~7분00초00	7분00초01 ~7분20초00	7분20초01 ~7분40초00	7분40초01 ~8분00초00	8분00초01 이상
	팔굽혀펴기	30점	24점	18점	12점	6점	0점
		58 이상	57~52	51~46	45~40	39~34	34회 이하
	윗 몸 일으키기 (제한시간1분)	30점	24점	18점	12점	6점	0점
		55회 이상	54 ~ 50	49 ~ 45	44 ~ 40	39 ~ 35	34회 이하

붙임 9 종목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별표 5의2, 제34조의2제2항제1호 관련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자	100m 달리기 (초)	13.0 이내	13.1 ~ 13.5	13.6 ~ 14.0	14.1 ~ 14.5	14.6 ~ 15.0	15.1 ~ 15.5	15.6 ~ 16.0	16.1 ~ 16.5	16.6 ~ 16.9	17.0 이후
	1,000m 달리기 (초)	230 이내	231 ~ 236	237 ~ 242	243 ~ 248	249 ~ 254	255 ~ 260	261 ~ 266	267 ~ 272	273 ~ 279	280 이후
	윗몸일으키기 (회/1분)	58 이상	57 ~ 55	54 ~ 51	50 ~ 46	45 ~ 40	39 ~ 36	35 ~ 31	30 ~ 25	24 ~ 22	21 이하
	좌우 악력 (kg)	61 이상	60 ~ 59	58 ~ 56	55 ~ 54	53 ~ 51	50 ~ 48	47 ~ 45	44~ 42	41 ~ 38	37 이하
	팔굽혀펴기 (회/1분)	58 이상	57 ~ 52	51 ~ 46	45 ~ 40	39 ~ 34	33 ~ 28	27 ~ 23	22 ~ 18	17 ~ 13	12 이하
여자	100m 달리기 (초)	15.5 이내	15.6 ~ 16.3	16.4 ~ 17.1	17.2 ~ 17.9	18.0 ~ 18.7	18.8 ~ 19.4	19.5 ~ 20.1	20.2 ~ 20.8	20.9 ~ 21.5	21.6 이후
	1,000m 달리기 (초)	290 이내	291 ~ 297	298 ~ 304	305 ~ 311	312 ~ 318	319 ~ 325	326 ~ 332	333 ~ 339	340 ~ 347	348 이후
	윗몸일으키기 (회/1분)	55 이상	54 ~ 50	49 ~ 45	44 ~ 40	39 ~ 35	34 ~ 30	29 ~ 25	24 ~ 19	18 ~ 13	12 이하
	좌우악력 (kg)	40 이상	39 ~ 38	37 ~ 36	35 ~ 34	33 ~ 31	30 ~ 29	28 ~ 27	26 ~ 25	24 ~ 22	21 이하
	팔굽혀펴기 (회/1분)	50 이상	49 ~ 45	44 ~ 40	39 ~ 35	34 ~ 30	29 ~ 26	25 ~ 21	20 ~ 16	15 ~ 11	10 이하

※ 비고

1.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1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총점이 19점 이하인 경우 불합격 처리(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3조)

2.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3. 1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0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붙임 9-1 종목식 체력검사 종목별 측정시설, 인원 및 방법

종 목	측 정 방 법 등
100m 달리기	**가. 검사요원** - 계측원 1명 이상 / 출발신호원 1명 / 기록원 1명 이상 **나. 시설기구** - 100m 직선주로 2코스 이상 / 계측기 2개, 출발신호기 1개 - 2인1조가 동시에 출발할 때 중간 코스는 공간으로 둔다. **다. 측정방법** - 측정시간은 1/10초단위로 한다. - 중도에서 넘어졌을 때는 1회에 한하여 20분 후에 다시 달리게 한다. - 전자측정기기로 실시할 수 있다. **라. 기록** - 계측원은 출발신호기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주자의 몸통이 결승선 위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을 1/10초 단위로 계속 기록한다.
1,000m 달리기	**가. 검사요원** - 계측원 1명 이상 / 출발신호원 1명 / 기록원 1명 이상 **나. 시설기구** - 400m(200m) 타원형 트랙 / 계측기 2개 / 출발신호기 1개 **다. 측정방법** - 타원형운동장 또는 노상경주 코스를 사용한다. - 측정시간은 초 단위로 한다. **라. 기록** - 계측원은 출발신호기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주자의 몸통이 결승선의 수직면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을 1초 단위로 계측하여 정확히 기록한다.
윗몸일으키기	**가. 검사요원** - 계측원 1명 이상 / 기록원 1명 이상 **나. 시설기구** - 윗몸일으키기대 / 계측기(1대이상) **다. 측정방법** - 양발을 30㎝ 정도 벌려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머리 뒤에서 깍지를 끼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눕는다. - 측정횟수는 상체를 일으켜서 양쪽 팔꿈치가 양무릎에 닿은 다음, 다시 누운 자세로 돌아가게 해야 한다.

	- 양팔꿈치로 양무릎 위를 정확히 대었을 때를 1회로 간주하여 1분간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 전자측정기기로 실시할 수 있다. **라. 기록** - 정확한 동작으로 1분동안에 실시한 횟수를 기록한다. - 운동속도는 자유로이 한다. - 실시도중 목뒤에 마주잡은 손을 떼거나 몸을 앞으로 굽혔을 때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으면 그 횟수는 무효로 한다.
악력	**가. 검사요원** - 계측원 1명 이상 / 기록원 1명 이상 **나. 실시도구** - 악력기 **다. 측정방법** - 악력기에 의한 기계측정을 한다. **라. 기록** - 왼손, 오른손 각 2회씩 총 4회 측정하여 가장 높은 1회의 측정값을 기록한다.
팔굽혀펴기	**가. 검사요원** - 계측원 1명 이상 / 기록원 1명 이상 / 검사원 1명 이상 **나. 실시도구** - 매트, 초시계 1개 **다. 측정방법** - 양손을 어깨넓이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여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한다. - 머리부터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굽혀 몸(머리~다리)과 매트 간격이 5㎝ 이내로 유지시켰다가 원위치 한다. - 전자측정기기로 실시할 수 있다. **라. 기록** - 1분내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붙임 10 순환식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별표 5의3, 제34조의2제2항제2호 관련

1. 평가종목

순환식 체력검사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4.2킬로그램의 조끼를 착용하고 다음 각 목의 종목을 연이어 수행한 후 그 완주시간을 측정하는 검사를 말한다(그림 참조).

가. "장애물코스 달리기"는 매트(1.5미터 길이) 넘기, 허들(0.6미터 높이) 넘기, 계단 오르내리기(5단 계단), 장벽(1.5미터 높이) 넘기(2회 순환 시에만 수행)로 구성된 코스를 6회 반복하여 총 340미터를 달리는 종목

나. "장대 허들 넘기"는 엎드린 상태에서 일어나 장대 허들(0.9미터 높이)에 손을 짚고 넘은 후 뒤로 눕기를 3회 반복하는 종목

다. "당기기·밀기"는 신체저항성 기구(32킬로그램)를 각각 당긴 상태와 민 상태로 반원을 그리면서 이동하기를 각각 3회 수행하는 종목

라. "구조하기"는 모형인형(72킬로그램)을 잡고 당겨서 10.7미터 거리를 이동시키는 종목

마. "방아쇠당기기"는 원형으로 구멍(지름 23센티미터)이 뚫려있는 전방 구조물의 원안에 총구를 넣고 주로 사용하는 손은 16회, 반대쪽 손은 15회씩 방아쇠를 당기는 종목

2. 평가기준

제1호 각 목에 따른 종목의 완주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한 등급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완주시간은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1초 단위로 측정하여 기록한다.

가. 완주시간이 4분 40초 이하인 경우: 우수 등급

나. 완주시간이 4분 40초를 초과하고 5분 10초 이하인 경우: 보통 등급

다. 완주시간이 5분 10초를 초과한 경우: 미흡 등급

3. 평가방법

가. 제2호 각 목의 평가등급에 따른 합격 여부는 다음 1)과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영 제43조의3에 따라 어느 한 성(性)을 초과하여 합격시키는 경우에는 보통 등급에 속하는 해당 성의 응시자 중 완주시간에 따른 선순위자를 우수 등급을 받은 인원과 합산한 후 해당 성의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1) 우수 등급을 받은 사람: 합격

2) 보통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사람: 불합격

나. 그 밖에 체력검사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그림] 순환식 체력검사 수행 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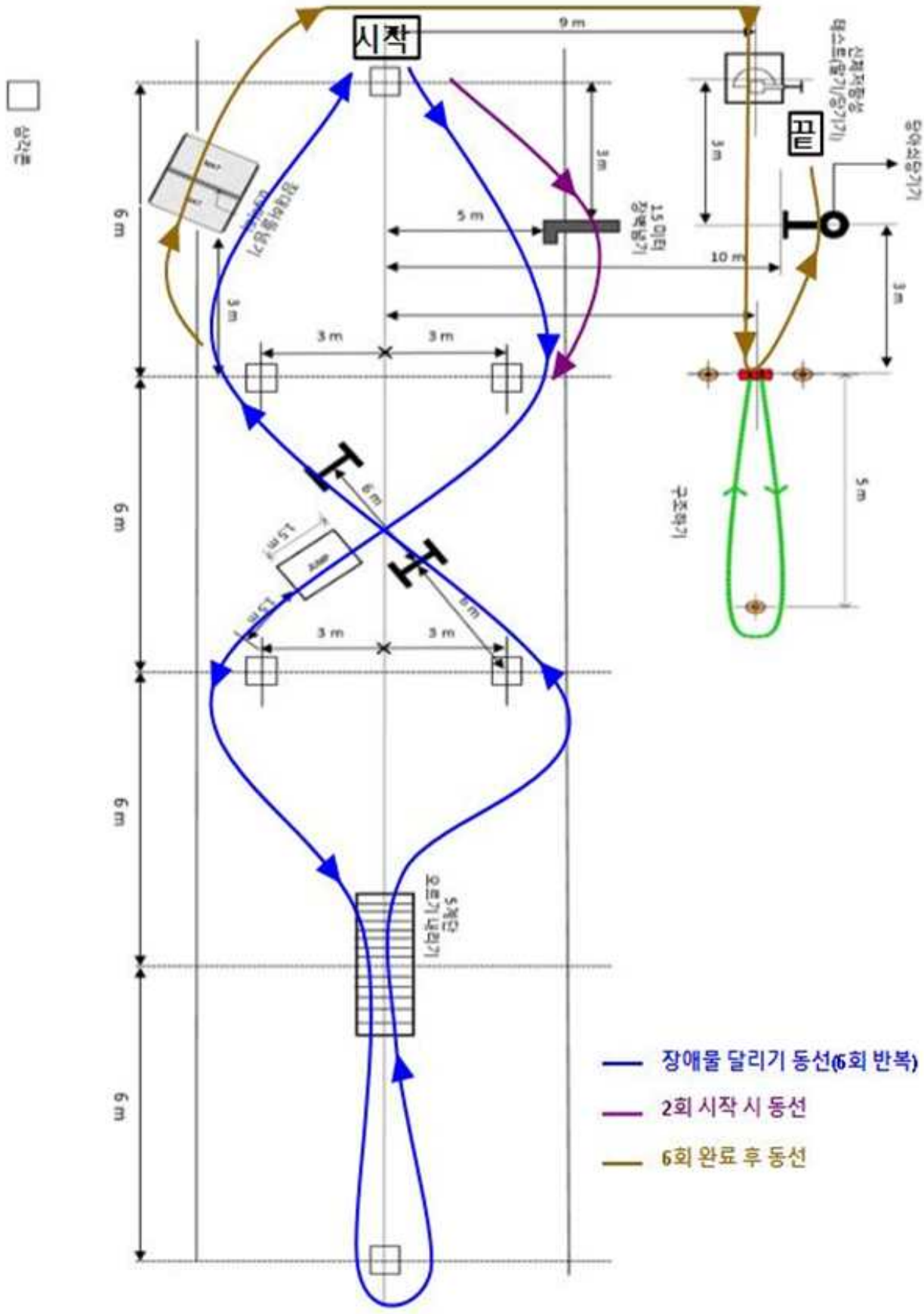

4. 측정 및 수행 방법

장애물코스 달리기 (340m)	▪ 팔자형으로 설치된 콘을 따라서 이동하며, 콘을 건드린 경우 콘을 원상태로 둔 후 진행 ▪ 매트(1.5m) 넘기의 경우 매트를 넘지 못하거나 라인을 밟으면 안되며, 성공할 때까지 매트 넘기 다시 진행 ▪ **계단 오르기(5단)는 한발에 1계단씩 오르내리고 2계단 이상 오르내리면 안되며, 성공할 때까지 계단오르기 다시 진행** **※ 2계단씩 올라간 경우 바닥으로 내려와서 다시 진행, 2계단씩 내려간 경우 계단 정상에서 다시 진행** ▪ 허들 넘기(0.6m)의 경우 장애물 바를 떨어뜨리지 않고 뛰어넘으며 바가 떨어질 경우 원래 상태로 정위치 한 후 성공할 때까지 첫번째 장애물 바로 돌아와 다시 진행 ▪ **장벽 넘기(1.5m)는 1회 코스 완료 후 2회 코스 시작 후 1회만 넘으면 되고 장벽의 측면 지지대를 이용하여 넘어서는 안되며, 성공할 때까지 장벽넘기 다시 진행**
장대허들넘기	▪ '엎드렸다가 일어나 장대 허들(0.9m)에 손을 짚고 넘은 후 뒤로 눕기'를 3회 왕복 ▪ **엎드릴 시 가슴·앞쪽 허벅지, 뒤로 누울 시 등 전체·엉덩이가 정확히 바닥에 닿아야 횟수로 인정되며, 감독관이 왕복 3회를 인정할 때까지 계속 진행하고, 미인정시 해당 동작부터 다시 진행**
당기기·밀기	▪ 특수 제작된 신체 저항성 기구(32Kg)를 완전히 당기거나 민 상태로 반원(180도)을 그리면서 이동하며, 순서는 당기기부터 3회 실시한 후 연이어 밀기 3회 실시 ▪ 당기고 미는 도중에 신체 저항성 기구에 빨간색이 표시되면 실패로 처리되고 해당 동작(밀기를 실패했다면 밀기부터)을 다시 진행 ▪ 해당 동작을 각각 3회 연속으로 수행해야 성공으로 인정
구조하기	▪ 모형 인형(72kg)에 설치된 줄을 잡고 10.7m 거리를 당겨서 모형 인형 전체가 도착 라인 안으로 들어와야 성공으로 인정
방아쇠당기기	▪ 직경 23cm의 원 안에 권총을 넣고 방아쇠 당기기를 주 사용손부터 16회 실시한 후 연이어 반대손 15회 실시 ▪ 원 안으로 총구가 들어가지 않거나 구조물에 닿을 경우 해당 손의 기록은 무효 처리되며, 해당 손부터 재측정을 진행하여 감독관이 인정할 때까지 진행

※ 비고

- 측정 감독관이 종목별로 다음 단계 진행이 어렵다고 판정(응시자 측정 포기, 부상을 당한 경우, 진행시간 6분 초과 등)할 경우 실격 처리할 수 있다.
- **기기 오작동·미작동으로 측정기록에 오류 발생 시 재측정 기회 제공**
- **기록원(검사관)은 측정요원으로부터 전광판의 기록 또는 초시계의 기록을 전달받아 정확히 기록 및 서명 날인**

붙임 11 경찰행정학 전공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

□ 경찰공무원 임용령 별표1의 2(제16조제4항제2호 관련)

인정 과목
1. 필수 이수과목: 경찰학, 범죄학, 경찰수사론, 범죄예방론, 형법, 형사소송법 2. 선택 이수과목: 경찰행정학, 경찰행정법, 헌법, 민사법 및 기타법, 자치경찰론, 비교경찰론, 범죄심리학, 범죄통계학, 피해자학, 형사정책론, 연구방법론, 경찰인권론, 경찰윤리론, 경찰사회론, 경찰경무론, 경찰관리론, 경찰생활안전론, 여성범죄론, 청소년범죄론, 특수범죄론, 사이버수사론, 과학수사론, 경찰교통론, 경찰경비론, 경찰정보론, 경찰외사론, 경찰보안론, 첨단경찰론, 경찰실습, 경찰무도

비고

1. 필수 이수과목 및 선택 이수과목의 각 과목에는 해당 과목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이 포함되며, 각 과목과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2. 각 과목(제1호에 따른 유사 과목을 포함한다)당 인정 학점의 상한은 3학점으로 한다.

□ 「경찰행정학 전공이수 인정과목에 관한 고시(경찰청고시 제2021-6호 별표)」

〈 필수과목 〉

인정과목	유 사 과 목
경찰학	경찰학개론, 경찰학개론 연습, 경찰학개론 각론, 경찰학 기초, 경찰학 세미나, 경찰학 실습, 경찰학 연습, 경찰학 영문강독, 경찰학 영서강독, 경찰학 원서강독, 경찰학 원강, 경찰학 원론, 경찰학 입문, 경찰학 각론, 경찰학 총론, 경찰학 특강, 경찰학 인턴쉽, 기초경찰학, 수험경찰학, 수험경찰학특강, 한국경찰학, 경찰실무, 경찰실무론, 경찰실무종합, 경찰종합실무
범죄학	범죄학개론, 범죄학원론, 범죄학이론, 범죄대책론, 범죄학세미나, 범죄학 영문강독, 범죄학 영서강독, 범죄행동과학, 범죄원인론, 범죄유형론, 범죄의 이해, 범죄사례연구
경찰수사론	경찰수사, 경찰수사 각론, 경찰수사실무, 경찰수사연습, 경찰수사총론, 경찰수사학, 경찰수사학 각론, 경찰수사학 총론, 기초수사학, 범죄수사, 범죄수사총론, 범죄수사각론, 범죄수사론, 범죄수사론 연습, 범죄수사론 특강, 범죄수사학, 수사, 수사경찰론, 수사면담조사론, 수사사례연구, 수사실무론, 수사증거론, 수사특강, 수사학, 수사학각론, 수사학개론, 수사학연습, 수사학총론, 수험수사특강, 범죄수사론세미나, 공인탐정학개론, 탐정학, 탐정학원론, 민간조사론, 민간조사실습, 민간조사학개론

범죄예방론	사고예방대책론, 문제지향범죄예방론, 범죄와안전세미나, 범죄지도, 재산범죄예방론, 범죄예방디자인
형법	형법각론, 형법각론강의, 형법각론연습, 형법총론, 형법총론연습, 형법특강, 형법판례강의, 형법판례연습, 형법세미나, 형법연습, 형법학각론, 형법학총론, 특별형법론, 경찰형법, 기초형법각론, 형사판례연구, 형사판례연습, 경찰형사법연습, 경찰형사법판례, 형사법개론, 형사법세미나, 형사법연습, 형사법특강, 형사법판례, 형사법판례연구, 형사특별법, 경찰형사법세미나, 형사사례연구, 형사사례연습, 형사사법연습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총론, 형사소송법각론, 형사소송법실무, 형사소송법연습, 형사소송법특강, 형사소송실무, 경찰형사소송법, 경찰형사소송법판례, 형사절차법, 경찰사법연습, 증거법, 형사증거법, 형사증거법론

〈 선택과목 〉

인정과목	유 사 과 목
경찰행정학	행정학, 행정학개론, 행정학총론, 행정학세미나, 행정학연습, 행정학원론, 행정학의이해, 경찰행정학개론, 경찰행정학세미나, 경찰행정학특강, 경찰행정학프로젝트, 경찰행정론, 경찰행정사례연구, 경찰행정세미나, 경찰행정원강, 경찰 조직 및 인사관리, 경찰조직과 인사관리, 경찰인사조직관리론, 경찰인사관리, 경찰인사관리론, 경찰인사론, 경찰인사행정, 경찰인사행정론, 인사행정론, 경찰인적자원관리론, 행정경찰인사관리론, 경찰소방인사론, 인사및재무행정, 재무행정론, 경찰재무론, 예산과재정, 경찰리더십론, 리더십이론과실제, 리더십의 이해와 개발, 경찰운용론, 경찰통제및예산관리, 경찰관리론, 공공관계론, 공공관리론, 경찰정책론, 경찰정책사례연구, 경찰정책세미나, 경찰정책학, 경찰소방조직론, 경찰조직관리, 경찰조직관리론, 경찰조직관리이론, 경찰조직론, 경찰조직인사론, 행정경찰조직론, 경찰과조직, 경찰행정과 창의적사고, 경찰행정과창업, 경찰과행정, 경찰행정학세미나, 행정경찰사례연구, 행정관리론, 행정관리실무, 한국행정실무, 경찰과 도시행정, 정책세미나, 정책학개론, 치안정책론, 행정정보체계론, 행정조직과공공정책, 경찰통제및예산관리, 국가정책의 이해, 경찰행정캡스톤디자인, 경찰활동의 측정과 평가, 특별사법경찰론
경찰행정법	경찰행정법학, 경찰행정법총론, 경찰행정법각론, 경찰행정법연습, 경찰작용론, 경찰작용법, 경찰행정소송실무, 행정법, 행정법총론, 행정법각론, 행정법특강, 행정법세미나, 행정법연습, 행정법입문, 행정법

	판례연구, 행정사례연구, 행정쟁송법, 행정절차법, 특별행정법, 경찰법, 경찰법세미나, 경찰법연구, 경찰법연습, 경찰실무조문연습, 경찰과법, 경찰과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구제법, 경찰기초법, 경찰특별법규, 법률과경찰, 공직법입문
헌법	헌법학개론, 헌법총론, 헌법각론, 헌법비교론, 헌법실무, 헌법연습, 헌법일반론, 헌법재판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 한국정부론, 경찰과 헌법, 공법(헌법과기본권)
민사법 및 기타법	법학입문, 법학기초이론, 법학개론, 민법총칙, 민법총론, 민법개론, 민법연습, 민사법연습, 민사법판례연구, 물권법, 채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채권총론, 채권각론, 재산과채권, 민사소송법, 민사판례연습, 재산과 물권, 노동법, 노동관계법, 가족법, 경제법, 계약법, 재산과 계약, 공법연습, 공정거래법, 국제거래법, 국제경제법, 국제법, 기업법총론, 기업법연습, 기업법무실습, 법률실무연습, 법집행절차법, 사법연습, 부동산법, 상법, 상법총론, 소비자보호법, 재산법, 전자금융법, 전자상거래법, 지적재산법, 지적재산권법, 친족상속법, 특수소송절차실무, 환경법, 회사법, 보험해상법
자치경찰론	경찰지방행정론, 경찰지역사회관계론, 지방자치와자치경찰론, 지방자치행정론, 지역·자치사회경찰론, 지역사회경찰론, 지역사회경찰활동, 지역사회안전론, 경찰과 지역사회, 커뮤니티폴리싱
비교경찰론	세계경찰제도론, 비교경찰제도론, 비교경찰학, 경찰제도론
범죄심리학	경찰심리학, 고급범죄프로파일링, 범죄심리개론, 범죄심리론, 범죄심리측정방법론, 범죄심리학 기초, 범죄심리학세미나, 범죄인프로파일링, 법심리학, 사이코패스와프로파일러, 수사및법정심리학, 수사심리세미나, 수사심리학, 심리학의 이해, 이상심리와 범죄행동, 이상심리학, 학습심리학, 발달심리학, 상담심리학, 사회심리학
범죄통계학	행정경찰통계론, 공식범죄통계이해, 범죄통계와 범죄예방, 범죄데이터분석, 범죄데이터분석기획, 범죄데이터 분석기초, 범죄데이터분석고급, 범죄데이터 분석도구, 범죄데이터베이스, 범죄데이터시각화, 빅데이터개론, 빅데이터분석론, 빅데이타범죄분석, 빅데이터아키텍쳐, 빅데이터와 범죄, 형사사법통계론
피해자학	범죄피해자학
형사정책론	형사정책, 형사정책개론, 형사정책세미나, 형사정책원강, 형사정책학, 형사사법개론, 형사사법및교정론, 형사사법원서강독, 형사사법의 이해, 형사사법체계론, 형사사법학, 형사사법학 특강, 형사사법행정론, 경찰과형사사법, 교정학, 교정학개론

연구방법론	경찰학 방법론, 경찰학 연구방법론, 범죄학 방법론, 범죄학연구방법론, 범죄학과 연구방법론, 범죄연구방법론, 심리학조사방법론, 형사사법연구방법론, 사회과학방법론, 사회과학조사방법론, 사회과학텍스트분석, 조사방법론, 경찰조사방법론, 범죄분석방법론
경찰인권론	경찰과인권, 경찰활동과 인권, 인권론, 형사절차와인권, 영화속의 법과 인권, 경찰소방공무원인성론
경찰윤리론	경찰윤리, 경찰윤리학, 경찰윤리봉사론, 경찰윤리와 철학, 군경찰윤리, 법·경찰윤리, 공직자윤리, 행정경찰공직윤리, 경찰철학, 행정경찰공직윤리, 안전과윤리, 법철학
경찰사회론	경찰과 사회, 경찰과 지역사회, 사회문제론, 사회병리학, 사회안전관리론, 사회와문화, 사회학의 이해, 현대사회문제, 현대사회문제론, 현대사회병리론, 현대사회와 법, 현대사회와 일탈, 현대사회와 범죄, 현대사회범죄론, 법과사회, 법과 사회 세미나, 미래사회와 경찰활동, 미래지향적 경찰활동, 안전도시와 경찰
경찰경무론	경찰기획론, 경찰문서사무관리, 경찰사특강, 경찰한국사, 경찰한국사연습, 군경한국사, 한국경찰사, 한국경찰제도사, 경찰제도사, 한국경찰행정사, 경찰행정사, 경찰의이해, 경찰이론과실무
경찰관리론	경찰연습, 경찰리더십론, 경찰문화론, 경찰상담사례관리, 경찰운용론, 경찰갈등관리론
경찰생활안전론	경찰방범론, 경찰생활안전실무, 생활안전론, 생활안전경찰, 생활안전경찰론, 지역사회안전종합설계
여성범죄론	여성범죄학, 젠더범죄론, 성범죄이론과실제
청소년범죄론	소년범죄론, 소년비행론, 소년사법개론, 소년사법과 보호, 청소년비행론, 청소년 육성제도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비행개론, 청소년비행론, 자살과집단괴롭힘
특수범죄론	기업범죄론, 폭력범죄론, 마약범죄론, 보험범죄론, 신종범죄론, 화이트칼라범죄론, 조직범죄론, 경제범죄론, 지식재산범죄론, 영화속의범죄와 실제사례연구
사이버수사론	미디어와범죄, 범죄와문화콘텐츠, 경찰사이버정보, 경찰사이버정보실무, 사이버범죄론, 사이버범죄심리론, 인터넷법, 소프트웨어와 컴퓨팅사고, 사물인터넷과 범죄, 사물관리론, 디지털증거종합설계, 디지털포렌식, 포렌식수사
과학수사론	법의학, 과학수사, 과학수사 세미나, 과학수사증거수집론, 범죄위험성평가, 범죄정보분석, 범죄증거분석학, 지문의이해, 법과학증거수집론

경찰교통론	교통학, 교통경찰론, 교통법규론, 교통안전론
경찰경비론	경비경찰론, 경비업법, 경비업특강, 경비일반론, 경비지도사, 경비지도사론, 경찰경비경호론, 경찰경비교통론, 경찰경호론, 경호학, 경호경비학, 경호경비론, 테러경비론, 테러대책론, 테러리즘, 테러정책론, 테러학개론, 대테러 및 인질협상론, 대테러국민안전론, 대테러리즘, 대테러정책론, 경찰위기관리론. 위기관리, 위기협상론, 재난관리론, 민간경비, 민간경비학, 민간경비론, 민간경비개론, 민간경비실무, 민간경비실습
경찰정보론	국가정보학, 국가정보론, 경찰정보관리, 경찰정보외사론, 경찰정보학, 정보경찰론, 정보학
경찰외사론	외사경찰론, 국제범죄론, 국제조직범죄론
경찰보안론	경찰보안외사론, 보안경찰론, 국가안보론, 국가안보와 치안, 북한학, 통일안보론, 산업보안, 산업보안 컨설팅, 산업보안경영, 산업보안관계법, 산업보안기술, 산업보안론, 산업보안비즈니스모델, 산업보안실무, 산업보안학, 산업안전보안론, 사이버보안, 사이버보안론, 군경보안론, 인적보안, 융합보안, 민간보안론, 물리보안
첨단경찰론	경찰활동과 드론, 산업안전과드론, 드론기반 경찰학사례, 드론이해와운용
경찰실습	경찰실습론, 경찰관서현장실습, 경찰교육훈련, 경찰실무실습, 경찰실무체험, 경찰행정학창업현장실습, 경찰행정학학기창업현장실습, 경찰행정학학기현장실습, 경찰행정학현장실습, 경찰행정현장실습, 경찰현장실습, 장기현상실습, 전공현장의 이해, 현장실습, 치안현장실습, 행정경찰공공학현장실습, 인턴십, 파출소현장체험, 형사사법세미나 현장실습, 경호현장실무체험, 교통안전실습
경찰무도	경찰무도론, 경찰무도 및 체포술, 체포술, 경찰체포술, 경찰체포·호신술, 체포호신술, 경비호신술, 경찰호신체포론, 경찰기초체력, 경찰무술, 경찰무예, 경찰사격, 경찰사격실무, 경찰체력, 경찰체력검정, 경찰체력검정실습, 경찰체력단련, 경찰체력실습, 경찰체육, 경찰체육실습, 군경무도, 무도, 무도 및 체포술, 무술, 무술학, 민족전통무도, 유도, 유도연습, 태권도, 특공무술

붙임 12 서류전형 · 구술시험 평가내용

<table>
<tr><th>채용 분야</th><th>평가 내용</th></tr>
<tr><td>변호사
(서류전형)</td><td>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직무경력</td><td>▸ 24개월을 초과하는 근무개월수×0.833
※ 경력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산정, 소수점 둘째 자리 버림
※ 총 35개월 9.1점, 총 36개월 9.9점, 총 37개월 이상 10점</td></tr>
<tr><td>졸업성적</td><td>▸ 졸업평균성적×50÷4.3
※ 사법시험 합격자는 연수원 졸업성적, 로스쿨 출신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성적</td></tr>
<tr><td>역량평가</td><td>▸ 직무수행계획서</td></tr>
</table>
</td></tr>
<tr><td>항공
(실기시험)</td><td>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비행능력</td><td>▸ 헬기에 탑승하여 제자리 비행, 장주비행(상승, 선회, 수평, 강하 비행) 이·착륙 시 조종능력, 승무원 협조사항, 비행안정성 평가</td></tr>
</table>
</td></tr>
<tr><td>뇌파분석
(구술실기시험)</td><td>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h>비율(%)</th></tr>
<tr><td>기본지식</td><td>▸ 뇌파의 발생 원리 및 뇌파의 기본 개념 이해
▸ 표준 뇌파 전극 배치, 뇌파 측정 방식 이해
▸ 뇌의 해부학적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이해
▸ 뇌파 잡음의 종류 및 저감 방법 이해</td><td>40</td></tr>
<tr><td>전문지식</td><td>▸ 주파수 분석 등 신호처리 이론 이해
▸ 뇌파 측정 패러다임 및 대표적인 ERP 이해
▸ 뇌파 측정 및 뇌파 분석 방법 이해 및 응용
▸ 분석 결과의 통계분석기법 이해 및 응용
▸ 뇌파 분석 결과의 뇌과학적 해석 능력
▸ 뇌파 분석 툴(tool)의 활용 능력</td><td>50</td></tr>
<tr><td>발전역량</td><td>▸ 전공·연구실적·근무경력과 연계하여 과학수사 분야 뇌파분석 발전방안 제시
▸ 뇌파 측정·분석·개발 관련 국내·외 관련분야 기관 등 근무경력
▸ 뇌파 측정·분석·개발 관련 논문 발표 및 특허 출원 등 연구실적</td><td>10</td></tr>
</table>
</td></tr>
<tr><td>범죄통계분석
(구술실기시험)</td><td>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h>비율(%)</th></tr>
<tr><td>기본지식</td><td>▸ 범죄학 이론에 대한 이해
▸ 통계 방법론에 대한 이해</td><td>40</td></tr>
<tr><td>전문지식</td><td>▸ 데이터의 개념과 분석기법에 대한 이해
▸ 데이터 분석 경험 및 연구 계획
※ 시험 당일 제공하는 질문지를 작성하여 평가에 참고</td><td>50</td></tr>
<tr><td>발전역량</td><td>▸ 형사사법기관의 공식범죄통계 발전(개선)방안 제시 등
※ 직무수행계획서를 참고하여 평가</td><td>10</td></tr>
</table>
</td></tr>
</table>

<table>
<tr><th colspan="2">채용 분야</th><th colspan="3">평가 내용</th></tr>
<tr><td rowspan="3">경찰
특공대
(실기시험)</td><td rowspan="2">폭발물
분석
요원</td><td colspan="3"><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내 용</th><th>비율(%)</th></tr>
<tr><td colspan="2">체력검정</td><td>▸ 1.5K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td><td>50</td></tr>
<tr><td rowspan="2">구술
시험</td><td>기본
지식</td><td>▸ 화약·폭약, 사제폭발물 등 관련 지식</td><td>25</td></tr>
<tr><td>전문
지식</td><td>▸ 국내·외 사제폭발물 관련 사건 분석
▸ 폭발물 사건발생시 현장조치 및 대응방법
▸ 사제폭발물 사건 예방책 등</td><td>25</td></tr>
</table></td></tr>
<tr><td>폭발물
처리
요원</td><td colspan="3"><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h>비율(%)</th></tr>
<tr><td>체력검정</td><td>▸ 2Km 달리기, 턱걸이, 40kg 사낭나르기</td><td>50</td></tr>
<tr><td>전문분야실기</td><td>▸ 성능시험(40점) ▸ 기폭·약포 제작시험(20점)
▸ 결선작업 및 폭파(30점) ▸ 화약류 폐기(10점)</td><td>50</td></tr>
</table></td></tr>
<tr><td>전술
요원</td><td colspan="3"><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내 용</th></tr>
<tr><td rowspan="2">체력
검정</td><td>남</td><td>▸ 윗몸일으키기 ▸ 제자리 멀리뛰기
▸ 왕복달리기 ▸ 2Km 달리기
▸ 턱걸이 ▸ 40kg 사낭나르기</td></tr>
<tr><td>여</td><td>▸ 윗몸일으키기 ▸ 제자리 멀리뛰기
▸ 100m 달리기 ▸ 1.5Km 달리기</td></tr>
</table></td></tr>
<tr><td colspan="2">외국어·안보
수사외국어</td><td colspan="3"><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h>비율(%)</th></tr>
<tr><td>번역 필기시험</td><td>▸ 한국어를 해당 외국어로 번역하는 능력
▸ 해당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능력</td><td>60</td></tr>
<tr><td>회화 구술시험</td><td>▸ 번역 필기시험을 통과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시사·문화·치안·생활영역 등 외국어 구사능력 평가</td><td>40</td></tr>
</table></td></tr>
<tr><td colspan="2">빅데이터
(구술실기시험)</td><td colspan="3"><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h>비율(%)</th></tr>
<tr><td>기본지식</td><td>▸ 데이터 수집·분석·결과 도출 관련 개념 이해
▸ 데이터 분석 패키지 활용 능력(R·Python)
▸ 데이터 추출·변환·적재 기술(ETL) 이해
▸ 데이터 표준화 등 품질 관련 기술 이해
▸ 데이터 분석 알고리즘 및 표준분석 모델 개발 이해</td><td>40</td></tr>
<tr><td>전문지식</td><td>▸ 분석 모형 설계 및 목적에 부합하는 분석 기법
▸ 데이터 시각화 기획 및 구축 방법
▸ 데이터 정합성·편향성 검증 및 오류 수정 방법</td><td>50</td></tr>
<tr><td>발전역량</td><td>▸ 전공·근무경력·연구실적 등과 연계하여 업무 추진 방향 제시</td><td>10</td></tr>
</table></td></tr>
</table>

붙임 13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

Ⅰ. 금지약물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1)]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drostanolone
- methenolone
-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 stanozolol
-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 hydrochlorothiazide
- chlorothiazide
- 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 methyl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 methylephedrine
-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

4. 마약류 : 총 11종

- Buprenorphine
- dextromoramide
- diamorphine(heroin)
- fentanyl 및 유도체
- hydromorphone
- methadone
- morphine
- oxycodone
- oxymorphone
- pentazocine
- pethidine

Ⅱ. 금지방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1)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붙임 14 경찰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경찰청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제6호 관련,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한 약물 및 방법은 금지됩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대상자는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로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 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로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를 **원서접수 시** 하여야 하며, **동의에 체크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붙임 15 자격증 등의 가산점 기준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별표 6

분 야		관련 자격증 및 가산점		
		5점	4점	2점
학 위		-박사학위	-석사학위	
정보처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2급 -워드프로세서1급 -정보보안산업기사
전자·통신		-정보통신기술사 -전자계산기기술사	-무선설비·전파통신·전파전자·정보통신·전자·전자계산기기사 -통신설비기능장	-무선설비·전파통신·전파전자·정보통신·통신선로·전자·전자계산기산업기사
국 어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 -KBS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62점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KBS한국어능력시험 6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KBS한국어능력시험 5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30점 이상
외국어	영 어	-TOEIC 900 이상 -TEPS 850이상 (New TEPS 488 이상) -IBT 102 이상 -PBT 608 이상 -TOSEL(advanced) 880 이상 -FLEX 790 이상 -PELT(main) 446 이상 -G-TELP Level 2 89 이상	-TOEIC 800 이상 -TEPS 720이상 (New TEPS 399 이상) -IBT 88 이상 -PBT 570 이상 -TOSEL(advanced) 780 이상 -FLEX 714 이상 -PELT(main) 304 이상 -G-TELP Level 2 75 이상	-TOEIC 600 이상 -TEPS 500이상 (New TEPS 268 이상) -IBT 57 이상 -PBT 489 이상 -TOSEL(advanced) 580 이상 -FLEX 480 이상 -PELT(main) 242 이상 -G-TELP Level 2 48 이상
	일 어	-JLPT 1급(N1) -JPT 850 이상	-JLPT 2급(N2) -JPT 650 이상	-JLPT 3급(N3, N4) -JPT 550 이상
	중국어	-HSK 9급이상(新 HSK 6급)	-HSK 8급 (新 HSK 5급-210점 이상)	-HSK 7급 (新 HSK 4급-195점 이상)
노 동		-공인노무사		
무 도			-무도 4단 이상	-무도 2·3단
부 동 산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교 육		-청소년상담사1급	-정교사 2급 이상 -청소년지도사 1급 -청소년상담사 2급	-청소년지도사 2·3급 -청소년상담사 3급
재난·안전관리		-건설안전·전기안전·소방·가스기술사	-건설안전·산업안전·소방설비·가스·원자력기사 -위험물기능장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경비지도사	-산업안전·건설안전·소방설비·가스·위험물산업기사 -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트레일러,레커) -조종면허(기중기,불도우저) -응급구조사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

분 야	관련 자격증 및 가산점		
	5점	4점	2점
화 약	-화약류관리기술사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교 통	-교통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교통기사 -도시계획기사 -교통사고분석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교통산업기사
토 목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법 무	-변호사	-법무사	
세무회계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전산세무 1·2급 -전산회계 1급
의 료	-의사 -상담심리사1급	-약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간호사, 의무기록사, 치과기공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 -임상심리사2급 -작업치료사
특 허	-변리사		
건 축	-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건축시공·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축, 건축설비기사	-건축·건축설비·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전 기	-건축전기설비·전기응용기술사	-전기·전기공사기사	-전기·전기기기·전기공사산업기사
식품위생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환 경	-폐기물처리기술사 -화공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농화학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사 -화공기사 -수질환경기사 -농화학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 비 고

1. 무도분야 자격증 다음 각 목의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나.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

   다.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2. 어학능력자격증은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3.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4. 자격증 제출기한은 당해 시험이 있는 적성검사 실시일까지로 한다.

붙임 16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현황(75개)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2)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가라테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씨름협회	대한레슬링협회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62)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대한프로태권도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대한종합격투기연맹	천무극협회	대한삼보연맹
경찰무도교육원	대한민국특공무술중앙협회	대한삼단봉협회
대한프로복싱협회	세계프로킥복싱무에타이총연맹	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대한민국경찰무도연맹	대한이종격투기연맹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1)

택견보존회

붙임 17 | **문제지 · 답안지 견본**

'23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 일반공채(101경비단), 전의경·경행·사이버·안보·마약수사 -

목 차

- 일반공채(101경비단), 경찰행정 경채-

【헌 법】 일반공채(101경비단) ---------- 1
【형 사 법】 공통과목 ---------- 3
【경 찰 학】 공통과목 ---------- 5
【범 죄 학】 경찰행정 경채 ---------- 7

- 전의경 경채 -

【형 법】---------- 9
【형사소송법】---------- 11
【경 찰 학】---------- 13

- 사이버·안보·마약수사 -

【정보보호론】---------- 15
【시스템네트워크보안】---------- 17
【데이터베이스론】---------- 19
【정보보안관리 및 법규】---------- 21
【디지털포렌식개론】---------- 23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답안작성 시 반드시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경 찰 청

사이버경찰청 : http://www.police.go.kr
원서접수사이트 : http://gosi.police.go.kr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답안지

답안지를 받는 즉시, 시험 응시표에 기재된 시험과목을 순서대로 기입

분야	시·도	응시번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⓪ ⓪	⓪ ⓪	⓪ ⓪ ⓪ ⓪ ⓪	⓪ ⓪ ⓪ ⓪ ⓪ ⓪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②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⑤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⑥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⑦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⑧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⑨

한글성명	
필적 감정용 기재란	(예시) 위 응시자와 동일함.

검인	검인 ㉿ 경찰청장
감독관 확인란	㉿

제 1 과목 ( )				
문번	1	2	3	4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4	①	②	③	④
5	①	②	③	④
6	①	②	③	④
7	①	②	③	④
8	①	②	③	④
9	①	②	③	④
10	①	②	③	④
11	①	②	③	④
12	①	②	③	④
13	①	②	③	④
14	①	②	③	④
15	①	②	③	④
16	①	②	③	④
17	①	②	③	④
18	①	②	③	④
19	①	②	③	④
20	①	②	③	④

제 2 과목 ( )				
문번	1	2	3	4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4	①	②	③	④
5	①	②	③	④
6	①	②	③	④
7	①	②	③	④
8	①	②	③	④
9	①	②	③	④
10	①	②	③	④
11	①	②	③	④
12	①	②	③	④
13	①	②	③	④
14	①	②	③	④
15	①	②	③	④
16	①	②	③	④
17	①	②	③	④
18	①	②	③	④
19	①	②	③	④
20	①	②	③	④

제 3 과목 ( )				
문번	1	2	3	4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4	①	②	③	④
5	①	②	③	④
6	①	②	③	④
7	①	②	③	④
8	①	②	③	④
9	①	②	③	④
10	①	②	③	④
11	①	②	③	④
12	①	②	③	④
13	①	②	③	④
14	①	②	③	④
15	①	②	③	④
16	①	②	③	④
17	①	②	③	④
18	①	②	③	④
19	①	②	③	④
20	①	②	③	④

제 4 과목 ( )				
문번	1	2	3	4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4	①	②	③	④
5	①	②	③	④
6	①	②	③	④
7	①	②	③	④
8	①	②	③	④
9	①	②	③	④
10	①	②	③	④
11	①	②	③	④
12	①	②	③	④
13	①	②	③	④
14	①	②	③	④
15	①	②	③	④
16	①	②	③	④
17	①	②	③	④
18	①	②	③	④
19	①	②	③	④
20	①	②	③	④

제 5 과목 ( )				
문번	1	2	3	4
1	①	②	③	④
2	①	②	③	④
3	①	②	③	④
4	①	②	③	④
5	①	②	③	④
6	①	②	③	④
7	①	②	③	④
8	①	②	③	④
9	①	②	③	④
10	①	②	③	④
11	①	②	③	④
12	①	②	③	④
13	①	②	③	④
14	①	②	③	④
15	①	②	③	④
16	①	②	③	④
17	①	②	③	④
18	①	②	③	④
19	①	②	③	④
20	①	②	③	④

응시자 준수사항

□ 답안지 작성요령

다음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되므로 기재된 내용대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점수산출은 판독결과에 따릅니다. 또한 답안은 <보기>와 같이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득점 불인정 등)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보기> 올바른 표기 : ● 잘못된 표기 : ⊘ ⊗ ◑ ◍ ⊙ ◔ ◔ ③

2.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연필 등에 의한 예비마킹, 미세한 이중표기, 손에 묻은 잉크가 답안지에 번진 경우, 농도가 옅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여 답안을 흐리게 표기한 경우 등에도 점수산출은 판독결과에 따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답안지를 받는 즉시 분야, 시도, 응시번호, 생년월일을 기입한 후 해당란에 정확히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 "●"로 표기하고, 한글성명을 정자로 기입합니다. 답안지를 교체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본인이 직접 작성(표기) 해야하며, 작성된 답안지는 1인1매만 유효합니다.
   (교체 전 답안지는 폐기처리됨)

4. 필적 감정용 기재
   (예시)와 동일한 내용을 본인 필적으로 아래 빈칸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5.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지 편철이 과목순서와 맞는지 여부, 문제지 누락, 인쇄상태 및 파손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손을 들어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6. 답안은 반드시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해야 하며,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해당 부분을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 또는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 하단의 타이밍 마크(▮▮▮▮)를 절대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 부정행위 등 금지

부정행위자는 경찰공무원법 제11조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분야 코드번호】

분 야	번호
일반남자	01
일반여자	02
전의경경채	03
101단	04
경찰행정학과	05
법학	06
세무회계	07
사이버수사	81
교통공학	91

【응시지구(시·도) 코드번호】

응시지구	번호	응시지구	번호
경찰청	01	경기북부청	11
서울청	02	강원청	12
부산청	03	충북청	13
대구청	04	충남청	14
인천청	05	전북청	15
광주청	06	전남청	16
대전청	07	경북청	17
울산청	08	경남청	18
세종청	09	제주청	19
경기남부청	10		

누구든지 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붙임 18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관련 규정

□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3조의3(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권자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제3조의2(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대상 채용시험 및 채용목표인원) ① 영 제43조의3이 적용되는 시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직무분야별 또는 시·도경찰청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1.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2. 영 제16조제4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② 제1항의 시험에 적용되는 채용목표인원은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15퍼센트를 곱한 인원수로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24조의2(양성평등채용목표제 합격자 결정) 제3조의2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른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제2차시험(체력검사)에서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보통" 등급에 속하는 해당 성 응시자 중 빠른 시간 순으로 "우수"등급을 받은 인원수와 합산하여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2. 제3차 및 제4차시험(필기시험)에서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목에 따른 득점을 하고 총득점에서 합격선의 -3퍼센트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가.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은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나. 영 제16조제4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 시험은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3. 제6차시험(면접시험)에서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퍼센트 이상(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는 불합격)을 득점하고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총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자로 결정한다.

4. 최종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성적 순으로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목표인원에 달할 때까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5. 시험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어느 한 성을 추가 선발하였더라도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를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6. 시험단계별 추가합격선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모두 합격자로 한다.